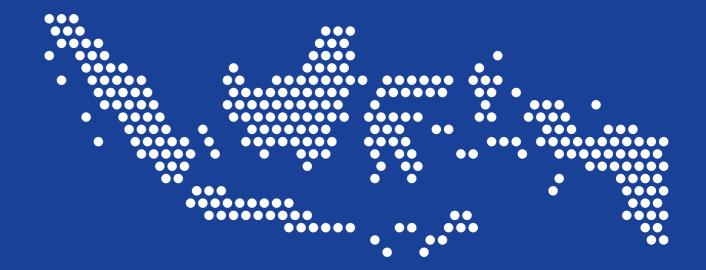


인도네시아 진출 및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 가이드북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이하 KIORCC, Korea-Indonesia Offsho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는 2019년 7월 22일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 해양수산부가 맺은 이행합의서에 따라 그해 12월 22일 자카르타 인니 해양수산부 내 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기업들의 인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IORCC는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① 수출상담회 개최, ② 인니 주요 프로젝트 웨비나 개최, ③ 한-인니 오프쇼어 Congress 개최, ④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지원, ⑤ 오일&가스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산유국이자 주요 광물자원 매장이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자원 부국으로 매장된 지원은 인도네시아 국부의 30% 내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직접 수출을 금지하고 가공된 형태로 해외 수출을 하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외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익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수적이며,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까다로운 법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과 기업에 대해 다소 폐쇄적인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자국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진출을 고민하거나 철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익사업을 위해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고민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법인설립은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가이드북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로펌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에게 이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가이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장

2022년 8월

5

목 차

인사말	4
목차	6
법적 근거 및 용어	9
가이드북	21
A 인도네시아의 일반 사업 현황	23
1. 사업체 유형	23
2. 유한 책임회사 설립 (PT)	32
B. 외국인 직접 투자	38
1. 일반개요	38
2. 외국인 직접 투자회사 설립 (PT PMA)	40
3. 대표사무소 (RO)	43
4. 외국인 직접 투자회사 특별 혜택	49
C. 건설 사업	50
1. 일반개요	50
2. 일반적인 건설업 현황 및 건설 사업의 외국인 투자자	51
3. 건설 서비스 사업을 위한 특별 면허	60
4. 정유 및 가스업 건설	64
5.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71
6. 외국인 직접 투자 건설회사 (BUJKA PMA)	75
7. 해상 운송 회사 사업 허가의 일반 개요	76

D. 일정 및 설립 절차에 대한 순서도	79
1.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79
2. 외국인 직접투자 건설회사 (BUJKA PMA)	81
3. 건설 작업 역량 인증서 (SKKK)	83
4.건설사업 자격증 (SBU)	84
E. 인력 및 운영	85
1. 인도네시아의 일반 인력 공급 현황	85
2. 건설 노동자를 위한 필수 요건	89
3. 외국인 근로자	90
4. 취업 및 체류 허가의 유형	91
5. 기타 다른 운영 규정 준수 요건	92
부록	101
부록	102

그림&표 목록

그림-1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3A) 설립 순서도	4
그림-2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KPPA) 설립 순서도	46
그림-3 외국 전기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 설립 순서도	48
그림-4 공개 경매 절차	68
그림-5 CIVD 등록 흐름/순서	69
그림-6 사업 내용 흐름	70
그림-7 KSO54	73
그림-8 컨소시엄55	74
그림-9 BUJKA RO 설립에 관한 순서도	79
그림-10 BUJKA PMA 설립에 관한 순서도	81
그림-11 SKKK 취득 순서도	83
그림-12 SBU 취득 순서도	84
그림-13 OSS 시스템의 허가증 발급 절차	98
표-1 위험 기반 사업 허가의 등급	37
표-2 투자 가치 면제	4
표-3 KPPA와 KP3A비교	44
표-4 일반 건설 컨설팅 서비스 요구 사항	52
표-5 일반 건설 작업 서비스 요구 사항	53
표-6 통합 건설 서비스 요구 사항	58
표-7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57
표-8 SKK Migas의 승인	64
표-9 조달계약	66
표-10 조달 절차/과정	67
표-11 BUJKA RO 설립 예상 소요기간	80
표-12 BUJKA PMA 설립 예상 소요기간	8



법적 근거 및 용어



일반 기업의 법적 근거(General Corporate Legal Basis)

- 1. 비즈니스 법률 ("KUHD")
- 2. 일자리 창출법에 관한 2020년 법률 제11호 ("일자리 창출법")
- 3.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개정된 유한 책임 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회사법")
- **4.** 1992년 일자리 창출법 ("협동조합법")에 의해 개정된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25호;
- 5. 재단에 관한 법률 제28호에 의해 개정된 2001년 법률 제16호 ("**재단법"**)
- 6. 고용 계약 기간, 아웃소싱, 근무 시간 및 휴식 및 고용 종료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5호 ("GR 35/2021")
- 7. 회사 공인 자본 및 소규모 비즈니스 기준에 대한 회사의 설립, 수정 및 해산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8호 ("GR 8/2021")
- 8.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4호 ("GR 34/2021")
- 9. 고용부 장관 2021년 정부 규정 이행 규칙 제8호 2021년 제34호 외국인 노동 인력 사용에 관한 규칙 ("MOP Reg.8/2021")
- 10.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장관 2015년 협동조합에 대한 자기 자본 이행 지침에 관한 규정 제11호 ("MCSME Reg. 11/2015")

외국인 투자 법적 근거

- **11.** 일자리 창출법 ("**투자법"**)에 의해 개정된 자본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 12. 위험 기반 사업 허가 기관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5호 ("GR 05/2021")
- 13, 2021년 대통령 규정 제49호에 의해 개정된 투자사업 분야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10호 ("PR 10/2021")
- 14. 2000년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에 관한 대통령령 제90호 ("PD 90/2000")
- 15.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전자 통합 시스템에 관한 2021년 투자 조정위원회 의장 규정 제3호 ("BKPM Reg 3/2021")







- **16.**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서비스 및 투자 시설에 대한 지침과 절차에 관한 2021년 투자 조정위원회 회장 규정 제4호("BKPM Reg 4/2021")
- 17. 위험 기반 사업 허가 감독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21년 투자 조정위원회 회장 규정 제5호 ("BKPM Reg 5/2021")
- 18. 인도네시아 표준 비즈니스 분류에 관한 2020년 통계청 규정 제2호 ("BPS Reg. 2/2020").

건설 법적 근거

- 19. 일자리 창출법 ("건설 서비스법")에 의해 개정된 건설 서비스에 관한 2017년 법률 제2호
- **20**. 일자리 창출법 ("해운법")에 의해 개정된 해운에 관한 2008년 법률 제17호
- **21.** 2021년 정부 규정 제14호에 의해 개정된 건설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호의 시행규제에 관한 2020년 정부 규정 제22호 ("GR 14/2021")
- **22.** 건설 서비스 사업 소득에 관한 소득세에 관한 2008년 정부규정 제51호, 2009년 정부 규정 제40호에 의해 개정된 2008년 건설 서비스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정부 규정 제51호("GR 40/2009")
- 23. 2020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49호에 의해 개정된 대외 무역 회사 대표 사업 면허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2006년 무역 규정 제10호 ("MT Reg. 49/2020")
- 24. 외국인 인력 활용 절차에 관한 2018년 인력부 장관 규정 제10호 ("MoM Reg. 10/2018")
- 25.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부문의 위험 기반 비즈니스 라이센스 구현에 관한 비즈니스 활동 및 제품 표준에 관한 2021년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장관 규정 제5호 ("MEMR Reg. 5/2021")
- **26.** 공공사업 및 공공 주택 부문에 기초한 조직 사업 면허의 비즈니스 활동 및 제품 표준에 관한 2021년 공공사업 및 주택 규정 제6호 ("MPWH Reg. 6/2021")
- 27. 해상 운송 부문 사업 허가에 대한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에 관한 2018년 교통부 장관 규정 No. PM 89 ("MOT Reg. 89/2018")
- 28. 공공사업 및 주택 장관 회람 제2/2021호 사업 면허 증명서 및 작업 역량 증명서의 전환 서비스에 관한 공공 사업 및 공공 주택 장관의 회람 개정 ("MPWH 회람 2/2021")
- **29.** 법령 번호 KEP-0041/SKKMA0000/2017/S 생산 공유 계약자를 위한 공급망 관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정판 (**Pedoman Tata Kerja No 007** 또는 "**PTK 007**")

- **30.** 중앙집중식 통합 공급 업체 데이터베이스(CIVD) 프로젝트에 대한 SKK Migas 대표 회람 No. 0505/ SKKO0000/2016/S0 ("회람 0505/2016")
- **31.** SKK Migas 조달 통제 대리인의 CIVD 표준 절차에 대한 2017년 회람 No.EDR-0346/ SKKMH0000/2017-S7 ("회람 0346/2017")

과세 법적 근거

- 32. 2021년 세금 규정 조화에 관한 법률 제7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3년 소득세에 관한 법률 제7호 ("소득세법")
- 33. 2021년 세금 규정 조화에 관한 법률 제7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3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에 관한 법률 제8호 ("부가가치세법")
- 34. 2021년 세금 규정 조화에 관한 법률 제7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3년 일반 규정 및 조세 절차에 관한 법률 제6호 ("일반 조항 및 조세 절차법")
- 35. 2021년 세금 규정 조화에 관한 법률 제7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5년 세관에 관한 법률 제11호 ("관세법")
- 36. 2018년에 제정된 법인관리시스템 및 전자 통합 사업허가 시스템을 통한 전자 납세자등록 및 납세자번호 발급지침에 관한 세무총국 PER-20/PJ/2018년도 규정 ("Perdirjen Pajak 20/2018")

용어

번호	용어	정의	
1	АоА	정관 (Anggaran Dasar)	
2	AGMS	연례 주주 총회 (Rapat Umum Tahunan Pemegang Saham)	
3	AMDAL	환경 영향 분석보고서(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4	API	수입자 식별 번호 (Angka Pengenal Import)	
5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6	ВКРМ	투자조정청 (Badan Kegiatan Penanaman Modal)	
7	BNSP	국가 전문 인증 위원회 (Badan Nasional Sertifikasi Profesi)	
8	BOC	위원회 (Dewan Komisaris)	
9	BOD	이사회 (Anggota Direksi)	
10	BPJS Kesehatan	건강 사회 보장 프로그램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11	BPJS Ketenagakerjaan	인력 사회 보장 프로그램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	
12	BUJKA	외국인 건설회사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번호	용어	정의	
13	BUJKA PMA	외국인 직접 투자 건설사 (Perusahaan Jasa Konstruksi Asing)	
14	BUJKA RO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Kantor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15	CIVD	중앙집중식 통합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Sistem Database Vendor Terintegrasi)	
16	Disdukcapil	인구 및 시민 등록부 (Dinas Kependudukan dan Catatan Sipil)	
17	DPMPTSP	원스톱 통합 서비스 (Dinas Penanaman Modal dan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18	GMS	주주총회 (Rapat Umum Pemegang Saham)	
19	IDR	인도네시아 루피아(Indonesia Rupiah)	
20	KITAS	제한 체류 허가증 (Kartu Izin Tinggal Sementara)	
21	KBLI	인도네시아 사업분야 분류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22	KEK	특별 경제구역 (Kawasan Ekonomi Eksklusif)	
23	KK	가족관계 증명서 (Kartu Keluarga)	
24	KKKPR	공간 활용 활동에 대한 적합성 확인 (Konfirmasi 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번호	용어	정의	
25	KKKS	석유 및 가스 협력 계약 체결자 (Kontraktor Kontrak Kerja Sama)	
26	KKNI	인도네시아 국가 자격 프레임 워크 (Kerangka Kualifikasi Nasional Indonesia)	
27	KP3A	외국 무역 회사 대표 사무소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28	KPBPB	자유 무역지대 및 자유 항구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29	KSO	협력 운영 (Kerja Sama Operasi)	
30	LKOA	국외 거주자의 존재/도착에 관한 보고서 (Laporan Keberadaan Orang Asing)	
31	LKPM	투자 활동 보고서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32	LPJK	건설 서비스 개발청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	
33	LSBU	건설서비스 사업자 인증기관 (Lembaga Sertifikasi Badan Usaha Jasa Konstruksi)	
34	LSP	직업 인증 기관 (Lembaga Sertifikasi Profesi)	
35	MEMR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또는 장관)	
36	MPWH	공공사업 및 주택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공공사업 및 주택부 (또는 장관)	
37	МОМ	노동 인력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인력부(또는 장관)	
38	MOLHR	법률 및 인권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 및 인권부(또는 장관)	

번호	용어	정의	
39	MOT	교통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부(또는 장관)	
40	MSE	초소형기업	
41	MSME	초소형 및 중소기업	
42	MT	무역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부(또는 장관)	
43	NIB	사업자등록번호 (Nomor Induk Berusaha)	
44	NIK	세관 식별 번호 (Nomor Induk Kepabeanan)	
45	NPWP	납세자 식별 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46	OJK	재무 서비스 당국 (Otoritas Jasa Keuangan)	
47	OSS System	온라인 단일 등록 시스템	
48	OSS-integrated RDTR	OSS 시스템과 RDTR 간의 통합	
49	PB-UMKU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허가증 (Perizinan Berusaha Untuk Menunjang Kegiatan Usaha)	
50	PJBU	건설 사업자 대표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51	PJSKBU	PJBU가 건설 사업 주체 내에서 특정 하위 자격의 기술적 측면을 책임지도록 임명한 전문가 (Penanggung Jawab Sub-Klasifikasi Badan Usaha)	

번호	용어	정의	
52	PJTBU	건설 사업 기술 책임자 (Penanggung Jawab Teknis Badan Usaha)	
53	PKKPR	공간 사용 활동에 대한 적합성 승인 (Persetujuan 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54	PKWT	기간 확정 고용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55	PKWTT	무기한 정기고용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56	PMA Company	외국인 투자자와의 유한 책임 회사	
57	PT	유한 책임 회사 (Perseroan Terbatas)	
58	PWH	공공 사업 및 주택	
59	RDTR	공간 도시 세부 계획 (Rencana Detail Tata Ruang)	
60	RKS	작업 계획 및 요구 사항 (Rencana Kerja dan Syarat)	
61	RPTKA	파견 외국인 배치 계획 (Rencana Penempatan Tenaga Kerja Asing)	
62	SABH	법인 관리 시스템 (Sistem Administrasi Badan Hukum)	
63	SBU	건설 사업자 법인 증명서 (Sertifikat Badan Usaha)	
64	SIJK	통합 건설 서비스 정보 시스템 (Sistem Informasi Jasa Konstruksi)	
65	SIOPSUS	특별 해상 운송업자 운영 면허 (Surat Izin Operasi Perusahaan Angkutan Laut Khusus)	

번호	용어	정의	
66	SIUPAL	해상 운송 사업 면허 (Surat Izin Usaha Perusahaan Angkutan Laut)	
67	SKKK	건설 작업 역량 증명서 (Surat Keterampilan Kerja Konstruksi)	
68	SKK Migas	상류 부문 석유가스 감독청 (Satuan Kerja Khusus Pelaksana Kegiatan Usaha Hulu Minyak dan Gas Bumi)	
69	SKTT	임시 거주자 등록증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70	SMAP	뇌물 방지 관리 시스템 (Sistem Manajemen Anti Penyuapan)	
71	SMM	품질 경영 시스템 (Sistem Manajemen Mutu)	
72	SPDA	행정 문서 대체 인증서 (Surat Pengganti Dokumen Administrasi)	
73	SPPL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에 관한 확인 문서(Surat Pernyataan Kesanggupan Pengelolaan dan Pemantauan Lingkungan Hidup)	
74	TDP	회사 등록 증명서 (Tanda Daftar Perseroan)	
75	TKA	외국인 노동자 (Tenaga Kerja Asing)	
76	TKK	건설 인력 (Tenaga Kerja Konstruksi)	
77	UKL-UPL	환경 관리 조치 및 환경 모니터링 조치(Upay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Upay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78	VITAS	조건부 체류 비자 (Visa Tinggal Terbatas)	



A

인도네시아의 일반 사업 현황

1. 사업체 유형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업체는 현행 법률과 규정에 의해 2개의 범주, 즉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뉜다. 법인과 비법인의 주요 차이점은 법인의 자산이 주주/창업자의 개인 자산과 분리 여부이다.

또한 비즈니스 조직과 사회 조직으로서 사업자 주체의 차별성이 있다. 비즈니스 조직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설립되거나 설립자를 위한 수익 센터의 형태로 설립되며, 그 수익은 설립자의 지분에 따라 배당금 형태로 분배된다. 비즈니스 조직이 상업 분야에 참여하여 설립 자에게 분배될 이익을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이익을 제공하고 사회. 종교. 인도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첨부1」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의 다양한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인과 비법인의 다양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 유한 책임 회사 (PT)

PT는 회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회사법에 따르면 PT는 창업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자본 제휴 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구조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영업활동을 한다. PT는 이윤을 얻기 위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항상 회사법 및 그 시행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T는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회사법에 따르면, PT의 모든 순이익은 PT의 주주총회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배당금의 분배는 각 주주의 주식 소유에 비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PT(PMA 회사 포함)는 회사법에 의해 최소 2명의 주주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공







증서를 통해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¹. PT에서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PT 설정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B.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PT 설립 시 최소 2명의 주주를 보유해야 하는 요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면제조 항이 있다. 2

- i. 주식이 국가 소유인 PT (국가 소유 기업 또는 Badan Usaha Milik Negara)
- ii. 지방 정부가 지분을 완전히 소유한 PT (지방 소유 기업 또는 Badan Usaha Milik Daerah)
- iii. 마을 정부가 지분을 완전히 소유한 PT (마을 소유 기업 또는 Badan Usaha Milik Desa)
- iv. 증권거래소, 청산 및 보증기관, 예탁결제기관 및 기타 기관을 자본시장 분야의 현행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PT
- v. MSE(초소형기업) 기준을 가지고 있는 PT

MSE 기준을 가진 PT는 단일 개인 주주를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면제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MSE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 초소형 기업:

- (a) 사업소재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최대 1,000,000,000 IDR의 사업 자본을 보유하거나. 3
- (b) 연간 최대 2,000,000,000 IDR의 매출 기록.⁴

ii. 소형 기업:

- (a) 사업소재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1,000,000,000 IDR 이상 최대 5,000,000,000 IDR의 사업 자본을 보유하거나.
- (b) 연가 최소 2,000,000,000 IDR 이상 최대 15,000,000,000 IDR의 매출 기록.5

단 한 명의 개별 주주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 **1** 회사법 제7조 1항
- 2 회사법 제7조 7항
- **3** GR 7/2021규정 제35조 3항
- 4 GR 7/2021규정 제35조 5항 a1
- **5** PP 7/2021규정 제35조 5항 b

PT는 일반 PT로 전환되어야 한다.⁶

- i.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있거나.
- ii. 위에서 설명된 MSE 기준 미충족

회사법에 따르면 PT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허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⁷ 허가 자본은 최소 25%를 발행하고 지급해야 하며, 유효한 예금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⁸ 유효한 예금 증명은 (i) PT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주주 예금 증명, (ii) 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자료, 또는 BOD와 BOC에 의해 서명된 PT의 대 차대조표 등의 형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자본요건 (PMA Company 포함)으로 특정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PT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허가 자본금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⁹

b. 협동 조합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구성된 사업단체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요건이 협동조합 정관에서 결정되는 임시회원을 가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1차 기능은 조합원의 복지,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촉진하는 동 시에 경제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 i. 최소 9명이 설립하는 1차 협동조합
- ii. 최소 3개 이상의 1차 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되는 2차 협동조합.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⁶ GR 8/2021규정 제9조 1항

⁷ 회사법 제32조 2항

⁸ 회사법 제33조 1항 및 2항

⁹ GR 8/2021규정 제5조

- i. 공증 서류의 형태로 정관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 ii. 법인으로서 승인을 얻기 위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비준 서류 형태로 제출한다. 비준은 설립 증서를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된다.

협동조합의 초기 최소 자본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 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i. 자체 자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 (a) 원금 저축
- (b) 의무 저축
- (c) 적립금
- (d) 지원금
- ii. 초기 자본인 대출 자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 (a) 그 구성원으로부터
- (b) 기타 협동조합 또는 기타 협동조합 구성원
- (c)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 (d)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서신의 발행
- (e) 정관 또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출처

거기에 더불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협동조합의 자본은 자본 참여, 즉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이나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 자산으로부터 파생시켜 협동조합의 자본 구조를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¹⁰ 그러한 자본 참여의 재원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¹¹

i 정부

- (a) 정식 국가 정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 (b) 외국 정부, 국제 기구, 단체 및 기관은 그러한 자본 참여가 어떠한 정치적 이익과 도 관련되지 않으며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 ii. 조합 구성원
- iii.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또는 외국 국적의 성인은 법적으로
- 10 MCSME Reg. 11/2015 규정 제1조 2항
- 11 MCSME Reg. 11/2015 규정 제4조 1항

그러한 조치를(자본 참여를) 수행할 수 있다.

- iv. 법인체
- (a) 협동조합
- (b) 국유기업
- (c) 지역 소유의 기업
- (d) 유한 회사
- v. 그 밖의 법인
- (a) 개인 무한회사 (CV)
- (b) 상사/사무소
- (c) 재단 또는 민간 단체
- (d) 그 외에 공증된 여타 법인체

이러한 자본 참여는 협동조합의 경영진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서면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된다.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세금을 포함한 비용, 감가상각비 및 그 밖의 부채를 공제한 1년 이내에 취득한 협동조합의 수입으로 한다. 적립금으로 감액된 협동조합의 이익은 조합원별로 조합에 제공한 용역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조합원 회의에서 논의된 협동조합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그 회의가 열리기 1개월 전에 조합원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12

- i. 전년도 말 대차대조표와 당해 연도의 손익 계산 및 그 근거 자료
- ii. 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 활동 그리고 현재 수익

c. 재단

재단은 특정 사회, 종교 또는 인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는 별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자급자족하고¹³, 따로 구성원을 두지 않으며 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지 않는다.

¹² 협력법 제35조

¹³ 기초법 제1조

재단은 다음의 경우 경영위원회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후원자 (Pembina), 수탁자 (Pengawas), 운영위원회 (Pengurus), 또는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¹⁴ 자산을 양도하거나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 i. 재단을 위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상시 근무
- ii. 재단의 설립자가 아닐 것
- iii. 설립자. 후원자 또는 수탁자와 관련 없음

비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단은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전망이 밝은 다양한 사업체에 투자할 수 있다. 총 투자 금액은 재단의 총자산 가치의 최대 25%까지 가능하다.

재단법은 재단이 설립자의 개인 자산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의 자산은 화폐,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i. 구속력이 없는 기부 또는 원조
- ii. 종교/공동체를 위해 기증된 재산(wakaf)
- iii. 지원금
- iv. 증거 보조금
- v. 재단의 정관 및/또는 시행 중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기타 자금

재단의 모든 자산은 재단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재단법 령에 따라 재단의 조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후워자
- ii. 수탁자
- iii. 운영위원회 (Pengurus)

후원자는 재단 기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으로, 기업의 주주총회(GMS)에 필적하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후원자들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수탁자들은 일반적으로 재단의 운영에 있어 이사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출납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재단의 최고 기관인 후원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국적과 거주에 관한 필수 요건이 재단의 운영이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이사장, 비서 또는 회계 담당자로 활동하는 재단의 경영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민이어야한다.
- ii.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민이 아닌 재단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하다
- iii. 재단의 이사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노동허가증과 체류허가증(KITA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단은 외국 국적의 당사자(사람 또는 단체)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외국 당사자가 설립한 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¹⁵

- i. 외국인 신분증. 정관 및 면허증 제출
- ii. 해당 재단의 초기 자산으로 사용될 자산의 최소 가치가 100,000,000 IDR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립자의 서신
- iii. 재단의 활동이 지역 사회나 인도네시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립자들의 서신

재단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재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 또는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또 운영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그들의 재단에 대한 재무 문서를 부기 및 재무 행정에 관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만들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회계연도가 폐쇄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i. 이미 달성한 성과와 지난 회계 연도의 재단의 조건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
- ii. 기말 재무상태, 활동성, 현금 유동성과 기록들이 망라된 재무보고서.

¹⁴ 기초법 제3조 15 GR 63/2008 규정 제11조

재단이 재단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다른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는 정관 조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수탁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후원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재단의 경우 국가 지원, 해외 지원 또는 기타 개인이아 단체로부터 500,000,000 IDR 이상을 수령하거나 최소 200,000,000.00 IDR 이상의 기증물(wakaf)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면, 해당 재단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과는 MOLHR 및 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사본과 함께 후원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어로 발행되는 일간지에도 발표되어야 한다.

a. 협회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종교적,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구성된 법인체이다. ¹⁶ 인도네시아 연방 규정 Staatsblad 64/1870 이 협회에 대해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협회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 i.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춘 사단법인
- ii.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추고 있지 않은 비법인 협회

앞에서 언급한 두 조직은 모두 회원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협회 설립 과정의 관리를 규제하는 MOLHR Reg.3/2016 규정과는 별도로, 현재 협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운영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다. Statsblad 64/1870은 비합법적인 협회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협회는 인도네시아어로 Perkumpulan, Perhimpunan, Ikatan, 그리고 Paguyuban 등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된다. 일반 협회는 법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협회에 의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회원 개개인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협회는 법적 실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민법 제1653조~1665조에

16 MOLHR Reg 3/2016 규정 제1조 1항

의해 적용 받는다. 아직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는 협회와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b. 개인 무한회사 (CV)

CV는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없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파트너로 나뉜다.

- i. 능동적 파트너,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활동을 책임지는 사람
- ii. 수동적 파트너, 비즈니스 활동 또는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본 제공자. 17

CV는 법적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책임 측면에서, 능동적 파트너는 수행된 사업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자산을 분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동적 파트너는 제공된 자본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¹⁸

c. 회사

회사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¹⁹ 회사는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모든 구성원은 그 회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²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자본을 통제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또한 회사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나 회사의 손실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

¹⁷ KUHD규정 제19조

¹⁸ KUHD 규정 제20조

¹⁹ KUHD 규정 제16조

²⁰ KUHD 규정 제18조

2. 유한 책임회사 설립 (PT)²¹

PT를 설립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유한 책임 회사의 명의 확보 (PT)

회사 이름을 예약하는 절차는 공증인이 처리한다. GR 43/2011 규정에 따라 PT의 이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²²

- i. 라틴어 글자로(알파벳으로) 표기
- ii. 타사에 의해 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거나 타사의 명칭과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 iii. 공공 질서 및/또는 도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iv. 관련 기관이 허가하지 않는 한 국가 기관, 정부 기관, 국제 기관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함
- v. 단어를 형성하지 않는 숫자 또는 일련의 숫자, 문자 또는 일련의 문자로 구성되지 않음
- vi. 일반적이고 막연한 의미의 회사, 법인 또는 민간 파트너십 이름이 아닌, 지향하는 목적들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담겨있는 회사, 법인 또는 민간 파트너십 이름
- vii. 회사의 의도, 목적 및 사업 활동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 viii. 그러한 의도, 목적 및 사업 활동에 따라 그러한 구성 요소가 회사 이름의 일부로 사용된다.

제안된 회사의 이름이 약칭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약칭어 사용은 (v)항을 제외하고 위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약칭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 i. 회사 이름의 앞 글자로 구성된 약칭
- ii. 회사 이름의 머리글자를 모아서 만든 두문자어(頭文字語) 약칭

또한, 규정 GR 43/2011은 회사 이름의 사용이 "Perseroan Terbatas"라는 문구 앞

21 본 가이드북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PT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PT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만 상세히 설명

22 GR 43/2011 규정 제5조

에 있거나 "PT"로 축약되어야 한다고 규정.²³

b. 법률 및 인권부 장관(MOLHR)의 유한 책임회사(PT) 정관 서명 및 승인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주주(섹션 B.1.a에서 설명한 초소형 기업 제외) 또는 그 대리인 이 PT의 정관을 포함하는 PT PMA의 설립 증서를 실행해야 한다. PT의 정관은 공증하기 전에 먼저 서명 후 MOLHR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제출은 공증인이 맡으며 전자상 행정처리로 이루어진다. 공증인은 MOLHR이 지정한 전자양식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설립증서가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MOLHR에 제출해야 한다.²⁴

설립 공증서를 MOLHR에 등록하려면 설립 주주들을 대신하여 공증인이 MOLHR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i. PT의 정관(AoA)
- ii. 주주. 이사회 및 위원회의 데이터(연락처 정보 등)
- iii. PT의 사업 소재지에 관한 주주, 이사회 및 위원회가 서명한 확인서
- iv. PT가 납세자 식별 번호(NPWP)를 획득할 의향이 있으며 PT의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선언한 이사회가 서명한 확인서
- v. PT 주주, 이사회 및 위원회가 PT의 수익 소유자에 대해 서명한 확인서. (현재 대부분의 공증인은 PT 주주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받아들임)
- vi. 주주, 이사회 및 위원회가 서명한 정관에 대한 MOLHR의 승인을 얻고 은행 계좌 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PT의 은행 계좌에 최초 발행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관한 확인서

c. 주주총회 (GMS)

정관이 MOLHR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승인을 받기 전에 모든 창립 주주, 이사, 위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PT 명의의 모든 계약과 계약은 PT의 첫 번째 주주총회에 비 준되어야 하며, PT와 제 3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PT 설립 증서에

²³ GR 43/2011규정 제8조 1항

²⁴ 회사법 제10조 1항

MOLHR 승인이 난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²⁵

주주, 이사 및 위원은(PT의 통합 이전에 계약 또는 계약의 실행과 이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새 계약 및 계약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부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주주, 이사, 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번째 주주총회는 그 취지의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주 주총회는 PT의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 정족수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소집되고 개최되어야 한다. PT에서 제일 먼저 임명되는 감사 선임은 보통 이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연례 주주총회(AGMS)에서 다시 확인된다. 연례 주주총회는 PT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²⁶

d. 주식 약정

MOLHR 승인을 얻은 후 PT는 주주명부, 특별명부 및 주식 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관은 PT가 주주들에게 주식 증서 또는 주식 소유에 대한 다른 문서적 증거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다. 주식 증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민간 기업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증명서이다. 두 개 이상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집단 주식 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주식 증서는 PT의 정관에 규정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PT는 주주 명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주주 명부는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해당 PT 사무실에서 언제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와 일련 번호, 각 주식의 액면가,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식 소유권을(이양 받은 경우) 그 소유권 이양 날짜와 이사회가 현금 대신 주식을 지불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기타 세부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²⁷

주주명부 외에도 PT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그 가족의 PT 및 기타 회사의 주

식 소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별 명부를 유지해야 한다. 28

e. PT를 위한 사업허가증

PT가 설립되면 (PT의 정관이 MOLHR의 승인을 얻음) PT는 온라인 단일 등록시스템 (OSS)에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OSS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PT는 회사의 의도된 사업이 어느 인도네시아 사업분야 분류(KBLI) 번호에 속하는 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PT를 포함한 모든 사업 행위자가 먼저 사업 허가 및/또는 위험 기반 사업 허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²⁹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허가는 사업자등록증(NIB), 표준인증서(Standard Certificate) 및 허가(Permit) 등이 있다. ³⁰ 사업자등록증(NIB)은 PT를 포함한 사업 행위자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등록 증명이며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식 자격증이다.

사업자등록증(NIB)은 기본적으로 회사등록증명서(TDP), 수입자식별번호(API) 및 세관식별번호(NIK)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NIB)를 획득한 회사는 또한 건강사회보장 프로그램(BPJS Kesehatan)과 인력사회보장 프로그램(BPJS Ketenagakerjaan)에 참여자로 자동 등록된다. 31 하지만 OSS 시스템은 최근에 구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전에 TDP, API 및 BPJ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NIK와 BPJS를 발행했던 기관들은 시스템이 노후되어 이따금 NIB를 NIK와 BPJS의 대체 증명서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체가 NI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요구된다 32

²⁵ 회사법 제13조 1항

²⁶ 회사법 제66조 1항

²⁷ 회사법 제50조 1항

²⁸ 회사법 제50조 2항

²⁹ BKPM Reg. 4/2021규정 제7조 1항

³⁰ BKPM Reg. 4/2021 규정 제7조 2항

³¹ BKPM Reg. 4/2021 규정 제18조 4항

³² BKPM Reg. 4/2021규정 제19조 6항

- i. 사업체의 이름
- ii. 사업체의 유형
- iii. 투자 현황iv. 설립 증명서 번호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유효성
- v. 담당자 주소
- vi. 종합적인 자본 계획
- vii. 경영진과 주주들의 데이터viii. 외국인 투자자(PMA)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국적 및 소재지
- ix. 사업체의 목표와 계획
- x. 사업체의 전화번호
- xi. 사업체의 전자 메일 주소xii. 사업체의 납세자 식별번호(NPWP)

또, 위의 내용 외에 사업체는 최소한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 일반 사업 활동 계획도 제 공해야 한다. 33

- i. 인도네시아 사업자분류번호(KBLI)에 따른 사업 부문
- ii. 사업장 위치
- iii. 주요 수출입 세관
- iv. 수입자식별번호 (API)
- v. 의료 및 고용 보험 등록 여부
- vi. 인력 현황 보고서

위의 세부 사항 및 요구 사항 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OSS 시스템은 고유한 전자 서명과 함께 13-자리 코드 형태로 사업자등록번호(NIB)를 생성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업허가 시스템은 KBLI 번호를 기반으로 한 각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허가증이 발급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³⁴ 현 시스템의 위험 수준은 하, 중하, 중상 및 상으로 나뉜다.³⁵

번호	위험수준	사업허가	
1	하	사업자등록증(NIB)	
2	중하	1. 사업자등록증(NIB) 2. 확인서 형태의 표준인증서(Standard Certificate, Sertifikat Standar)	
3	중상	1. 사업자등록증(NIB) 2. 정부부처/기관/지방정부 인증을 받은 표준인증서(Standard Certificate)	
4	상	1. 사업자등록증(NIB); 2. 허가증 (정부부처/기관/지방정부의 인증을 받은) 3. 표준인증서 (필요시)	

표-1 위험 기반 사업 허가의 등급

³³ BKPM Reg. 4/2021규정 제19조 7항

³⁴ GR 5/2021 규정 제7조

³⁵ GR 5/2021규정 제10조

В

외국인 직접 투자

1. 일반 개요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완전한 외국 자본을 사용하거나 현지 투자자와 합작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정한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 활동이다. 36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를 수행하는 외국인 개인, 외국 기업 및/또는 외국 정부일 수 있다. 37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a.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행 법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PT(외국인투자회사 PMA Company) 형태로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38
 - i. PT 설립 시 신주청약
 - ii. PT의 주식 매입
 - iii.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타 모든 수단을 수행
- b. 외국인 투자자들은 C.2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자본과 그 외 다른 요구되는 사항들로 대규모 사업 규모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³⁹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초소형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c.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관여하는 사업 부문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는지, 폐 쇄되어 있는지 또는 조건부로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시켜야 한다.

PT로서 외국인투자(PMA) 회사의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a. 외국인 개인
- b. 인도네시아인 개인
- c. 외국기업
- 36 투자법 제1조 3번
- 37 투자법 제1조 6번
- 38 투자법 제5조 2항 3단 및 PR 10/2021 규정 제7조 2항
- 39 PR 10/2021 규정 제7조 1항

- d. 외국인투자(PMA) 회사
- e. 인도네시아 지역 단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법의 제정 이후,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적용 가능한 제한을 개혁한 규정 PR 10/2021을 통해 시행했다. PR 10/2021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해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된 사업들로 구성된 리스트인 부정적 투자 리스트라고 불리는 규정이 있었다. 이제 PR 10/2021을 통해 이 목록은 "긍정적 투자 목록"이 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사업이 외국인 투자에 100%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R 10/2021에 따르면, 모든 사업 부문과 유형은 폐쇄, 부분 폐쇄, 정부만 수행할 수 있거나 중소기업부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된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국내투자를 완전히 제한하는 6개 부문이 있다. 40

- a. 마약의 재배 및 관련 산업
- b. 모든 형태의 도박 및 카지노 사업
- c.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열거된 금지종의 어업
- d. 천연 산호 또는 죽은 산호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산호, 수족관 및 기념품을 위한 천연 산호 활용 또는 추출
- e. 화학 무기
- f. 오존층에 유해한 산업용 화학 물질 또는 물질 제조.

위에 언급된 부문들 외에도 주류업(KBLI 11010), 주류업(KBLI 11020), 맥아음료업 (KBLI 11031) 등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문이 닫혀 있다.⁴¹

중앙정부만 하게 돼 있는 기업활동도 투자를 위한 문이 닫혀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른 당사자와 협력하여 수행될 수 없는 정부 서비스 활동 또는 전략적 방위 및 보안과 관 련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⁴⁰ PR 10/2021 규정 제7조 1**항**

⁴¹ PR 10/2021 규정 제2조 2항 b

2. 외국인 직접 투자회사 설립 (PT PMA)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PT) 형식이어야 한다. 42 따라서, PMA 회사의 설립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특정 요건이 포함된 PT의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외국인 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회사(PMA)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PMA 회사의 의도된 사업 라인에 따라 의도된 사업자분류(KBLI) 번호를 결정하고 PR 10/2021에 따른 외국인 소유 제한을 확인 하는 것이다. 위의 C.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PR 10/2021에 의해 기존의 폐쇄 및 부분 개방된 것들에 비해 현재는 더 많은 사업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100% 개방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소유 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 면책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 i. PR 10/2021 규정을 공표하기 전에 적절한 사업 허가를 받은 특정 사업 분야의 외국 인투자(PMA) 회사들 중에서 PR 10/2021에 따른 조항이 해당 PMA 회사에 더 유리 할 경우
- ii. PR 10/2021에 따른 조항이 의도된 외국인투자(PMA) 회사에 더 이득인 것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와 해당 PMA 회사 투자자의 원청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특별 권리를 획득한 PMA 회사

b. 자본 요구사항 및 투자 가치

외국인투자(PMA) 회사의 최소 발행 및 지불 자본은 다른 특정 법률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소 1,000,000,000 IDR 이다. 또한 PMA 회사는 사업자분류(KLBI) 번호당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1,000,000,000 IDR의 투자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44

그러나 PR 10/2021규정은 특별경제구역(KEK) 내에서 수행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총 1,000,000,000 IDR 이하일 경우에는 위의 최소 투자 가치 요건을 면제한다.

투자가치 이행을 위한 추가 면제는 다음 사업 범주에도 적용된다. 45

번호	사업 부문	한 개 이상의 KBLI 번호에 대한 IDR 100억(토지 및 건물 제외)의 최소 투자 가치 요구 사항	
1	도매	선택한 KBLI 번호는 모두 처음 4자리가 같음.	
2	식품 및 음료	선택한 KBLI 번호는 모두 처음 2자리가 같으며, 투자는 오직 한 사업장에 서만 이루어짐.	
3	건설 서비스	선택한 KBLI 번호는 모두 처음 4자리가 같으며, 투자는 오직 한 사업 활동 내에서만 이루어짐.	
4	제조	선택한 KBLI 번호들은 모두 한 생산 라인 내에 있음.	
5	부동산	(a)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포함한 통합 건물이나 주택 단지, 또는 1,000,000,000 IDR의 최소 투자 가치 (b) 하나의 통합 건물 또는 통합 주택 단지 내에 있지 않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합쳐졌거나,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1,000,000,000 IDR 이상의 투자 가치.	

표-2 투자 가치 면세

⁴² PR 10/2021 규정 제2조 2항 b

⁴³ PR 10/2021규정 제6조 4항

⁴⁴ BKPM Reg 4/2021규정 제12조 2항

⁴⁵ BKPM Reg 4/2021규정 제12조 3항

투자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으나 투자 가치가 토지 개발, 기계 구매, 원자재 구매, 공구(전기, 수도, 컴퓨터, 가구 등) 구매 및 운영비 운용 자본 등 이행될 사업 활동의 준비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투자 모니터링 기관인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회사(PMA)가 BKPM에 대한 정기 투자 보고서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는(특정 기간 없이) 최대 투자 가치 금액을 PMA 회사가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자 가치의 이행은 PMA 회사의 자체 자본 및/또는 대출에서 비롯될 수 있다.

최소 발행 및 납입 자본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금액은 주주들에 의해 회사에 실제로 투자되어야 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발행 및 지불된 자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증빙이 있다

- (i) 주주로부터 회사로의 이전 전표
- (ii) 감사받은 재무제표
- (iii) 회사 이사회와 위원회가 서명한 대차대조표

c. 허가증

외국인투자(PMA)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허가증을 획득하고 섹션 B.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표 2. 1(PT에 대한 사업허가)에 설명된 대로 PT에 관련한 필요한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d. 의무 보고 사항

외국인 투자회사(PMA)는 OSS 시스템을 통해 정기 투자활동보고서(LKPM)을 투자 조정청(BKPM)에 제출해야 한다. ⁴⁶ PMA 회사는 OSS 시스템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분기별로 LKPM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PMA) 회사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투자조정청(BKPM), 주(州) 원스톱 통합서비스(DPMPTSP), 시(市) 원스톱 통합서비스 (DPMPTSP), 특별경제구역(KEK) 관리

자, 자유무역지대(KPBPB) 인증기관 등이 PMA 회사의 위험 기반 사업면허를 고려하여 각자 자신들의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⁴⁷

모니터링 활동은 투자활동보고서(LKPM)에 대한 수집, 검증,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48 투자조정청(BKPM), 주(州) 원스톱 통합서비스(DPMPTSP), 시(市) 원스톱 통합서비스 (DPMPTSP), 특별경제구역(KEK) 관리자, 자유무역지대(KPBPB) 인증기관은 각각 LKPM에 대한 설명 또는 보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49 이에 사업자가 LKPM을 보완/개선하지 않으면 LKPM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50

3. 대표사무소

a. 대표사무소의 종류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51

- i.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3A 또는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 ii.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KPPA 또는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iii.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BUJKA RO 또는 Kantor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 iv. 외국인 전기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Kantor Perwakilan Jasa Penunjang Tenaga Listrik Asing)

외국인 투자회사(PMA)의 요구사항과 달리, 대표사무소(RO)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 자본 요구사항은 없다. 따라서, D.5절에서 논의된 BUJKA RO를 포함하여 각 대표 사무소에 대한 특정 요건이 있다.

^{*}TSP), 시(마) 전스숍 공압자미스 (DPIMIPTSP), 독월경제구역(NEN) 전디 47 BKPM Reg 5/2021규정 제31조 1항

⁴⁸ BKPM Reg 5/2021 규정 제31조 2항

⁴⁹ BKPM Reg 5/2021 규정 제35조 2항

⁵⁰ BKPM Reg 5/2021 규정 제31조 3항

⁵¹ MT Reg. 49/2020 규정 제9조 10항

⁴⁶ 투자법 제15조 c

번호	차이점	КРРА	КРЗА
1.	주 목적	모든 종류의 회사 사업 부문의 대표	무역회사 대표
2.	허가된 활동	a.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무소 활동을 감독, 연락, 조정 또는 관리 b.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직접투자 회 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a. 인도네시아 사용자에게 상품의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지침 제공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생산된 상품의소개, 홍보 및 마케팅 b. 시장 조사 및 본사에서 생산한 상품의 국내 판매 감독 c. 본사에서 필요한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출요건 논의 등 본사와 지역 사업체 연결 d. 수출 결정 시 본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
3.	제한된 활동	허용되지 않는 사항 a.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 한 수익 창출 b.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그 어떠 한 식의 경영 참여 c. KPPA는 주의 수도에 위치	입찰서 제출, 계약집행, 채권결제 및 이와 유사한 활동 등 실제 거래 및 매 매거래를 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할 수 없음. ⁵²

표-3 KPPA와 KP3A 비교

52 MT Reg. 49/2020규정 제4조

b. 대표사무소 설립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사(보통의 경우, 기 지명된 대표사무소)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서 OSS 시스템에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

i.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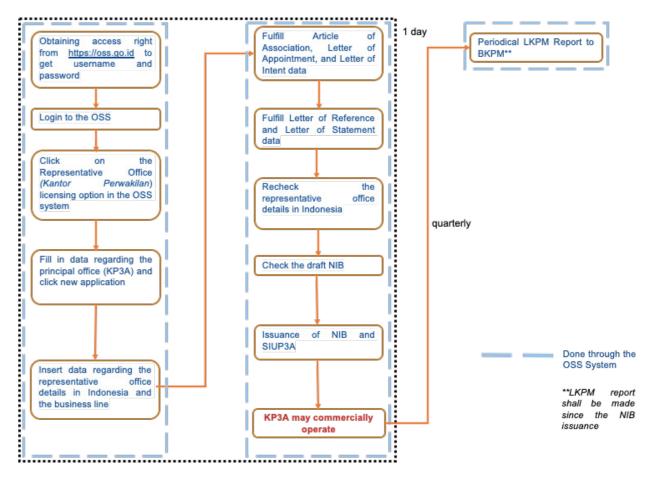


그림-1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3A) 설립 순서도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 (KP3A) 설립 허가를 얻으려면 다음 정보와 서류가 필 요하다.

- (a) 외국 본사에 관한 정보 (i) 성명, (ii) 사무소 주소, (iii) 국적 소재지, (iv) 이메일, (v) 전화번호 및 (vi) 사업 활동
- (b)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3A)에 관한 정보 (i) KP3A 대표자의 이름, (ii)

사무실 주소, (iii) 전화번호, (iv) 이메일 및 (v) KP3A 유형 (수행해야 할 활동)

- (c) 대표사무소 대표자 관련 정보 (i) 이름 및 (ii) 국적
- (d) 인력계획에 관한 정보 (외국인 및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수);
- (e) 외국 본사의 정관 또는 정관 및 법인 증명
- (f) 본사 소재지 주재 인니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임명장 및 의향서
- (g) 성명서⁵³
- (h) 본사 소재지 주재 인니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ii.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 (KP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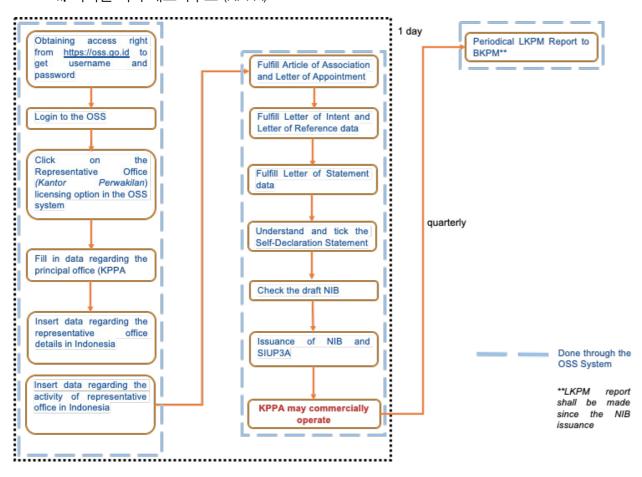


그림-2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KPPA) 설립 순서도

53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예정된 KP3A에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최고대표 부 서명(본사 소재지 주재 인니 대사관 인증을 받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정식으로 인증 받아야 함)

외국인 회사 대표사무소(KPPA) 설립 허가를 얻으려면 다음 정보와 서류들이 필요 하다.

- (a) 외국 본사에 관한 정보 (i) 성명, (ii) 사무소 주소, (iii) 국적 소재지, (iv) 이메일, (v) 전화번호 및 (vi) 사업 활동
- (b) 외국인 무역회사 대표사무소(KPPA)에 관한 정보 (i) KPPA 대표자의 이름, (ii) 사무실 주소, (iii) 전화번호, (iv) 이메일 및 (v) KPPA 유형 (수행해야 할 활동)
- (c) 대표사무소 대표자 관련 정보 (i) 이름 및 (ii) 국적
- (d) 인력계획에 관한 정보(외국인 및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수)
- (e) 외국 본사의 정관 또는 정관 및 법인 증명
- (f) 본사 소재지 주재 인니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임명장 및 의향서
- (g) 성명서54
- (h) 본사 소재지 주재 인도네시아의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iii.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BUJKA RO)에 대한 일정 및 설정 절차의 순서도는 섹션 A.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건설회사(BUJKA) 사업 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는 섹션 D.5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⁵⁴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예정된 KPPA에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최고대표 부 서명(본사 소재지 주재 인니 대사관 인증을 받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정식으로 인증 받아야 함)

iv. 외국인 전력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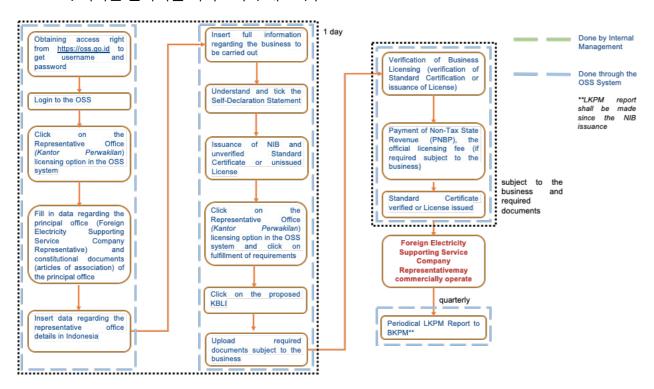


그림-3 외국인 전기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 설립 순서도

외국인 전력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얻으려면 다음 정보와 서류 들이 필요하다.

- (a) 외국 본사에 관한 정보 (i) 성명, (ii) 국적 소재지 (iii) 이메일 및 (iv) 전화번호
- (b) 외국 본사의 정관 또는 정관 및 법인 증명
- (c) 대표사무소 대표자 관련 정보 (외국인 또는 인도네시아인 개인일 수 있음) (i) 이름, (ii) 국적, (iii) 거주지 주소, (iv) 인도네시아 주소 및 (v) 납세자 등록 번호(인도네시아인 경우)
- (d) 대표사무소 관련 정보 (i)사무소 주소, (ii) 전화번호, (iii) 이메일, (iv) 인력계획서 (외국인 및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수)
- (e)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i) 사업자분류(KBLI)번호 및 (ii) 활동범위

위의 정보들을 제출한 후, 신청자는 OSS 시스템에서 환경 안전, 건강 및 보존 (K3L)에 대한 서약을 전자체계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NIB)는 비확인 표준 인증서와 함께 발급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외국인 전력지원 서비스회사 대표사무소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4. 외국인 직접 투자회사 특별 혜택 (PT PM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법 제정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및 투자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법의 파생 조항 중 하나는 투자자를 위한 재정 또는 비재정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이다. 재정 인센티브는 세금 인센티브(소득세에 대한 세금 공제,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총수입 감소 형태의 투자 수당)와 관세 및 소비세 인센티브(제조 산업을 위한 기계,물품 및 자재 수입을 위한 무료 세관)으로 구성되는 반면,비 재정인센티브는 사업 면허의 용이성,지원 인프라,에너지 공급 확실성,원자재 공급 확실성,이민조항 및 노동 조항 및기타 시설로 구성된다.

PR 10/2021규정에 따라, "우선 부문"으로 분류된 사업 활동에 투자하는 기업가는 재정 및/또는 비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선 사업 부문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국가 전략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일부
- b. 자본 및/또는 노동 집약적
- c. 새로운 기술 활용
- d. 선구적인 산업으로 간주
- e. 수출 지향적
- f.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지향

우선 사업 부문으로 분류된 사업 목록은 PR 10/2021에 첨부되어 있다.



건설 사업

1. 일반 개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건설 사업 활동은 (i) 건설 컨설팅 서비스 (ii) 건설 작업 서비스 및 (iii) 통합 건설 작업 서비스로 구성된 건설 서비스법에 따라 관리되며⁵⁵, 이는 일반 분야 및 전문 분야로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a. 건설 컨설팅 서비스

일반 건설 컨설팅 서비스 사업 분류는 (i) 건축, (ii) 엔지니어링, (iii) 통합 엔지니어링, (iv) 조경 건축 및 지역 계획으로⁵⁶ 구성되며, 여기에는 평가, 계획, 설계, 감독 및/또는 건설 관리가 포함된다.

전문 건설 컨설팅 서비스 분류는 (i) 과학 및 기술 컨설팅 및 (ii) 기술적 테스트 및 분석으로 구성되며⁵⁷, 여기에는 조사, 기술적 테스트 및/또는 분석이 포함된다.

b. 건설 작업 서비스

일반 건설 작업 서비스 분류는: (i) 건물 및 (ii) 민간 건물로 구성되며⁵⁸, 여기에는 개발, 유지보수, 분해 및/또는 재건축이 포함된다.

전문 건설 작업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설치, (ii) 특정 건설, (iii) 조립식 건설, (iv) 건물의 완공, 그리고 (v) 장비 대여⁵⁹. 이때 장비에는 건물 건설에 필요한 부품이나 기타 물리적 형태의 장비가 포함된다.⁶⁰

c. 통합 건설 서비스

통합 건설 작업 서비스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달 및 구현(건설)을 포함하는 (i) 건물 및 (ii) 토목 건물로 구성된다.⁶¹

2. 일반적인 건설업 현황 및 건설 사업의 외국인 투자자

건설업에 종사하게 될 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 또는 비 법인 사업체의 형태일수도 있다. 6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 주체는 그 규모에 따라, 즉 다음 자격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소형, 중형 및 대형 사업자로 세분된다. 63

- a. 연매출: 프로젝트 소유자가 합법화하고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SBU)의 유효 기간 내에 사업체의 자격 증명으로 기록된 건설 작업 계약에 근거함. 64
- b. 재무 능력: 등록 공인 회계사가 감사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함.(소규모 기업의 경우 감사 대상이 아님)⁶⁵
- c. 건설 인력 가용능력: 건설사업자 대표 (PJBU), 건설사업자 기술책임자 (PJTBU) 및 건설사업자 대표가 임명한 전문가 (PJSKBU)의 건설작업 역량 증명서 (SKKK) 보유를 기반으로 함. 66
- d. 건설장비 공급능력: 건설SBU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⁶⁷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음 중 하나를 설립 해야 한다. 68

a.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⁵⁵ 건설서비스법 제12조 및 GR 14/2021규정 제12조 1항 및 GR 5/2021규정 제80조 2항

⁵⁶ 건설서비스법 제12조 및 GR 14/2021규정 제12조 1항 및 GR 5/2021규정 제80조 2항

⁵⁷ 건설서비스법 제13조2항 및 GR 14/2021규정 제17조 1항

⁵⁸ 건설서비스법 제13조13항 및 GR 14/2021규정 제17조 2항

⁵⁹ 건설서비스법 제14조2항 및 GR 14/2021규정 제18조 1항

⁶⁰ 건설서비스법 제14조5항

⁶¹ 건설서비스법 제15 및 GR14/2021규정 제19조 1항

⁶² 건설서비스법 제19조

⁶³ 건설서비스법 제52조6번 및 GR 05/2021규정 제85조 1항

⁶⁴ GR 05/2021규정 제86조 1항과 2항

⁶⁵ GR 05/2021규정 제87조 1항

⁶⁶ GR 05/2021규정 제88조 1항

⁶⁷ GR 05/2021규정 제89조 1항과 2항

⁶⁸ 건설서비스법 제32조

b. 외국인 직접투자 건설회사(BUJKA PMA)와의 자본 협력을 통한 PT.

규정 GR 14/2021에 따르면, BUJKA PMA와 BUJKA RO는 고위험, 첨단 기술 및 고비용이라고 평가된 시장에서만 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분류번호(KBL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관련 건설 사업 활동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는 본 문서의 부록 1을 참조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는 추가 건설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사업 자격에 해당되어야 한다.

a. 일반 건설 컨설팅 서비스

자격	필수 요건
연매출 ⁶⁹	BUJKA RO : 최소 10,000,000,000 IDR
선매물	BUJKA PMA : 최소 2,500,000,000 IDR
재무 능력 ⁷⁰	BUJKA RO : 최소 2,000,000,000 IDR
세구 증력	BUJKA PMA : 최소 500,000,000 IDR
건설인력 동원능력 ⁷¹	BUJKA RO :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2.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노동자 자격에 따른 기초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 기술책임자 1명
	3.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사업 자격에 맞는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작업 역량이 증명된 각 건설 사업 부문 당 1명의 기술 책임 전문가

⁶⁹ GR 05/2021규정 제90조 1항 c

	BUJKA PMA :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건설인력 동원능력	2.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9급 자격이 있거나, 사전에 건설 노동자 자격에 따른 기초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 기술책임자 1명
	3.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8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사업 노동 자격에 맞는 기초 전문가로 입증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1명의 기술 책 임 전문가
건설 장 비 공급능력 ⁷²	해당 사항 없음

표-4 일반 건설 컨설팅 서비스 요구 사항

b. 건설업 컨설팅 서비스 전문가

특별한 자격은 없다. 73

c. 일반 건설 작업 서비스

자격	필수 요건	
연매출 ⁷⁴	BUJKA RO : 최소 100,000,000,000 IDR	
	BUJKA PMA : 최소 50,000,000,000 IDR	

⁷² GR 05/2021규정 제92조 c

⁷⁰ GR 05/2021규정 제91조 1항 c

⁷¹ GR 05/2021규정 제92조 c

⁷³ GR 05/2021규정 제85조 3항

⁷⁴ GR 05/2021규정 제92조 c

- ∥□ - ⊒-175	BUJKA RO : 최소 35,000,000,000 IDR
재무 능력 ⁷⁵	BUJKA PMA : 최소 25,000,000,000 IDR
	BUJKA RO :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2.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노동자 자격에 따른 기초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 기술책임자 1명
건설인력 동원능력 ⁷⁶	3.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사업 자격에 맞는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작업 역량이 증명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1명의 기술 책임 전문가
	BUJKA PMA :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2.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8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사업 노동 자격에 맞는 중급 전문가로 입증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1명의 건설 사업 기술 책임 자
	3.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7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사업 노동 자격에 맞는 기초 전문가로 입증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1명의 기술 책임 전문가
건설장비	BUJKA RO의 경우: 각 사업 부문 당 최소 5가지 주요 장비
공급능력	BUJKA PMA의경우: 각 사업 부문 당 최소 3가지 주요 장비

표-5 일반 건설 작업 서비스 요구 사항

d. 특별 건설 작업 서비스

특별한 자격은 없다.77

e. 통합 건설업 서비스

자격	필수 요건	
연매출 ⁷⁸	BUJKA RO의 경우: 최소 100,000,000,000 IDR	
언메폴	BUJKA PMA의 경우: 최소 50,000,000,000 IDR	
TIID 12479	BUJKA RO의 경우: 최소 35,000,000,000 IDR	
재무 능력 ⁷⁹	BUJKA PMA의 경우: 최소 25,000,000,000 IDR	
	BUJKA RO의 경우: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건설인력 동원능력 ⁸⁰	2.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노동자 자격에 따른 기초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 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 기술책임자 1명	
	3. 인도네시아 국가자격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 사업 자격에 맞는 전문가로 입증 또는 ASEAN 건축 설계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설작업 역량이 증명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2명의 기술 책임 전문가	

⁷⁷ GR 05/2021규정 제85조 3항

^{75 2021} GR 05/2021규정 제91조2항 c

⁷⁶ GR 05/2021규정 제93조 c

⁷⁸ GR 05/2021규정 제90조 3항 b

⁷⁹ GR 05/2021규정 제91조 3항 a

⁸⁰ GR 05/2021규정 제94조 a

	BUJKA PMA의 경우:
	1. 최고 결정권을 가진 건설사업자 대표 1명
건설인력 동원능력	2.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9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사업 노동 자격에 맞는 중급 전문가로 입증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1명의 건설 사업 기술 책임자
	3. 인도네시아 국가기술 8급 자격이 있거나, 건설사업 노동 자격에 맞는 기초 전문가로 입증된 각 건설사업 부문 당 2명의 기술 책임 전문가
건설장비	BUJKA RO의 경우: 각 사업 부문 당 최소 5가지 주요 장비
공급능력 ⁸¹	BUJKA PMA의경우: 각 사업 부문 당 최소 3가지 주요 장비

표-6 통합 건설 서비스 요구

f. BUJKA 및/또는 BUJKA RO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

규정 GR 5/2021의 제415조부터 제429조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 공사 서비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건설 회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제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 과태료 부과
- c. 사업 활동의 일시적 취소
- d. 블랙리스트에 상정
- e. 관련 사업 면허 취소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 및 주택부장관 (MPWH)의 행정 제재의 부과를 위한 권고에 기초하여 주어진다. 사업허가 취소의 제재는 건설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및 OSS시스템에 대한 건설서비스 사업신청서를 통해 공표되어야 한다.

GR 5/2021 제415조부터 제4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BUJKA PMA 및 BUJKA RO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제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호	위반	제재
1.	건설인력 교체 보고 지연 ⁸²	서면 경고 및 매일 5,000,000 IDR 행정 벌금 참고 : 제재 부과 후 15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 는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사업 활 동의 일시적 정지가 부과된 시점 15 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는 공공사업 및 주택부 장관에 의해 취소된다.
2.	각 건설 하위 분류 활동에 관 련된 주요 장비 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이행 지연 ⁸³	서면 경고 및 매일 5,000,000 IDR 행정 벌금 참고 : 제재 부과 후 15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는 일시 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사업 활동의 일시적 정 지가 부과된 시점 15 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는 공공사업 및 주택부 장관에 의해 취소된다.

⁸² GR 05/2021규정 제417조

⁸³ GR 05/2021규정 제418조

⁸¹ GR 05/2021규정 제95조 2항 a

3.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 (SBU) 미보유 ⁸⁴	서면 경고 및 다음 세부 사항과 같은 행정적 벌금 부과 a. BUJKA RO의 경우: BUJKA RO 가 소유 한 총 계약 금액의 20 %의 벌금; 그리고 b. BUJKA PMA의 경우: BUJKA PMA 가 소유 한 총 계약 금액의 10 %의 벌금 참고: 서면 경고 및 제재 부과로 30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는 제재가 해결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
4.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 (SBU) 갱신 지 연 ⁸⁵	서면 경고 및 매일 5,000,000 IDR 행정 벌금. 참고 :제재 부과 후 15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는 일시 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사업 활동의 일시적 정 지가 부과된 시점 15 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는 공공사업 및 주택부 장관에 의해 취소된다.
5.	건설사업 역량 증명서(SKKK) 미보유 [®]	서면 경고 및 행정적 벌금: BUJKA 가 소유 한 총 계약 금액의 10 % 금액 부과. 참고 : 서면 경고 및 제재 부과로 30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는 제재가 해결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84	GR	05/202	11규정	제419조
----	----	--------	------	-------

⁸⁵ GR 05/2021규정 제420조

6.	통합건설서비 스 사업정보시 스템 적용을 통 한 연간 사업활 동 보고 의무 준수 및 실적기 록 불이행 ⁸⁷	 a. BUJKA RO의 경우 ● 1차 경고 서한 ● 1차 경고 서한 발신 후 5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차 경고 서한 ● 2차 경고 서한 발신 이후 5일 이내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3차 경고 서한 및 100,000,000 IDR의 행정 벌금 부과. b. BUJKA PMA의 경우 ● 1차 경고 서한 ● 2 차 경고 서한 발신 후 5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차 경고 서한 ● 2차 경고 서한 발신 이후 5일 이내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차 경고 서한 및 50,000,000 IDR의 행정 벌금 부과.
7.	통상적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본화 구조 및 기술 투자 기준 불 이행 (BUJKA PMA 해당) ⁸⁸	서면 경고 및 소유한 총 계약 금액의 10 % 의 행정적 벌금 부과. 참고 : 서면 경고 및 제재 부과로 30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 PMA는 제재가 해결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8.	BUJKA RO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⁸⁹	서면 경고 및 소유한 총 계약 금액의 10 % 의 행정적 벌금 부과. 참고 : 서면 경고 및 제재 부과로 30 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BUJKA는 제재가 해결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

⁸⁷ GR 05/2021규정 제422-425조

⁸⁶ GR 05/2021규정 제420조

⁸⁸ GR 05/2021규정 제427조

⁸⁹ GR 05/2021규정 제426조

참고: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SBU) 취소에 대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회사와 건설사업자 대표 (PJBU) 및 건설사업자 기술책임자 (PJTBU) 까지 모두를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SBU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새로운 건설사업자 허가 (SBU)를 신청할 수 있다.⁹⁰

표-7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a. 주요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업체의 형태
- b. 인도네시아 시민을 최고 지도자로 임명
- c. 국가 BUJKA와 공동 운영 (KSO)을 수립하고 KSO 기술 기준을 충족
- d. 국내 건설 자재 및 기술 우선 사용
- e.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의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 정책에 맞춤
- f. 기술 이전 프로세스 수행
- g. 전문가 수준에서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
- h.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관리 및 기술 분야의 보조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위치보다 적어도 두 단계 낮을 수 있음.

유의할 점은 건설업자가 BUJKA나 BUJKA RO에서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같은 자격을 갖춘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건설 인력의 교체는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에 보고해야 한다.⁹¹

3. 건설 서비스 사업을 위한 특별 면허

a. 건설 사업 법인 증명서 (SBU)

위험 기반 허가 제도를 참조하면, 건설 서비스 사업에서 사업분류 (KBLI)번호는 중간에서 고위험 사업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NIB)와 같은 표준 사업 허가서 외

90 GR 05/2021규정 제428조

91 GR 05/2021규정 제88조 6항과 7항

에도, 건설 서비스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표준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⁹² 표준 인증 취득 요건은 외국인건설회사 대표사무소(BUJKA RO) 및 외국인 직접투자 건설사(BUJKA PMA)를 포함하여 건설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건설 서비스 사업자는 또한 온라인 단일등록 OSS 시스템에서 사업 허가 신청에 따라 NIB가 발급될 때 검증되지 않은 표준 인증서를 획득할 것이다. 또한, 건설 서비스 사업자는 표준 인증서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검증된 표준 인증서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건설 서비스 사업자가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 (SBU)를 획득해야 한다.

SBU는 외국 건설 서비스 사업자의 역량 평준화 결과를 포함하여 건설 서비스 사업자의 역량에 대한 분류 및 자격에 대한 인정 증명을 의미한다. 93

일자리 창출법과 GR 05/2021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SBU는 건설서비스개발청 (LPJK)에서 구할 수 있다. 현재, SBU 발급에 대한 평가는 건설서비스 사업자인증기관 (LSBU)에 의해 수행되지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건설사업자 법인증명서 (SBU)는 OSS 시스템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LPJK 사업체를 평가하고 SBU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서비스 사업자인증기관(LSBU)가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94 SBU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 및/또는 수정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BU는 OSS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평가는 사업자분류(KBLI) 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획한 특정 건설 사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KBLI 번호의 옵션은 이 안내서의 부록 I에 첨부되어 있다.

공공사업 및 주택부 회람 서신 2/2021이 발행되기 전에 LPJK는 건설사업자 법인증명 서(SBU)와 건설 사업 역량 증명서(SKKK)의 관리에 관한 과도기를 거친다. GR 05/2021 규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업 면허 취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일된 면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통합 시스템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전환기는 공식적으로 공공사업 및 주택부 회람 2/2021의 발행 중에 시작되며, 공식적으로 공공사업 및 주택부 회람 5/2022의 제정으로 종료된다.

⁹² GR 05/2021규정 제14조 1항

⁹³ 건설서비스법 제1조 11번

⁹⁴ GR 14/2021규정 제41조 4항

OSS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NIB)를 획득한 후, 사업자는 OSS 시스템에서 공공 사업 및 주택부 (MPWH)의 허가서 포털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여 SBU를 획득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 (a) 관련 사업협회 및 LSBU를 선택한다 (LPJK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b) 다음과 관련된 필수 데이터 및 정보를 입력한다.
 - (i) 사업체 세부사항(정보문서, 주주정보, 이사진정보)
 - (ii) 재무자료(대차대조표, 매출보고서, 기존계약)
 - (iii) 장비(장비 목록, 장비 사진), 장비 조달은 SBU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해야 한다.
 - (iv) 인력(인정자, 기술책임자, 기타 인력에 대한 정보)
 - (v) SMAP 이행에 관한 ISO 37001:2016 또는 SMAP 문서 또는 성명서 이행 (SMAP 이행은 사업규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며 소규모 SBU는 SBU 발행일 현재 3년, 중규모 SBU는 2년, 대규모 SBU는 1년).
 - (vi) ISO 9001, SMM의 이행 또는 SMM 이행에 관한 성명서. SMM 약속 이행은 SBU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c) 선정된 LSBU는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불완전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d) SBU는 송장을 발행하고 인증 계약서 초안을 비즈니스 행위자에게 제공한다.
- (e) 사업주체는 LSBU로부터 지급청구서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청구서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LSBU의 적용 메커니즘에 따라 지급증명서를 제출한다.
- (f) 지급이 완료된 후 LSBU는 평가자를 배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 한다.
- (g) 평가자는 사업자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LSBU에 권고 및 평가 보고서를 제공 한다.
- (h) LSBU는 평가자의 보고서와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 행위자의 역량을 결정한다.
- (i) LSBU가 해당 사업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프로세스는 종료(완료)된다.
- (i) 각하된 경우 사업체는 인증절차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 (k) LSBU가 해당 사업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LSBU는 RKS를 LPJK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한 인증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I) LPJK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SBU의 번호 부여 및 기록을 수행한다.
- (m) OSS 시스템에 대한 추가 프로세스를 위해 LPJK는 시스템을 통해 SBU 데이터를 허가 포털에 제출한다.
- (n) 허가 포털은 SBU 데이터를 기술 데이터 문서로 처리하며, 기술 데이터 문서는 OSS 시스템의 표준 인증서 문서와 통합되어야 한다.

- (o) 허가 포털은 OSS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p) 승인 권한을 가진 자는 표준인증서의 발급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 (q) 승인 권한을 가진 자가 발급된 표준증명서를 거부할 경우, 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준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
- (r) 표준 인증서가 승인되면 NIB 및 검증된 표준 인증서가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다.

b. 건설 작업 역량 증명서 (SKKK)

SBU 취득 요건 외에 건설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건설사업 역량증명서 (SKKK)를 보유한 건설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⁹⁵ SKKK는 건설 인력 역량을 인정받은 증거다. SKKK는 (i) 운영자, (ii) 기술자 또는 분석가, (iii)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⁹⁶ SKKK는 LSP에서 발행하며, SKKK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 및/또는 수정할 수 있다.

건설작업 역량증명서(SKKK)는 통합건설서비스 정보시스템(SIJK)와 직업인증기관 (LSP)에 연결된 공공사업 및 주택부 허가서 포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97 건설인력(TKK) 들의 건설작업 역량증명서(SKKK) 획득을 위한 역량 시험은 요청된 작업 위치에 따라 직업인증기관(LSP)이 수행한다. LSP는 요청된 직무에 대한 인증 체계에 따라 역량 테스트를 수행한다. LSP는 다음 단계에 따라 TKK 결과를 처리한다.

- (a) LSP는 평가자의 보고서 및 권장 사항에 따라 TKK의 결과를 결정한다.
- (b) LSP 정보 시스템은 LPJK 시스템에 MPWH 허가 포털로 전달되도록 통지한다.
- (c) 해당 인력이 TKK를 통과했다는 결과가 표시되면 LSP는 그 결과를 BNSP에 제출하다.
- (d) BNSP는 SKKK 번호와 BNSP 등록 번호를 정한다.
- (e) LSP는 SKKK 등록 번호와 함께 제공되도록 LPJK에 SKKK 번호 및 BNSP 등록 번호를 제출한다.
- (f) LPJK가 SKKK 등록 번호를 LSP에 제출한다.
- (g) LSP는 TKK의 자격, 분류, 하위 분류에 따라 SKKK를 발급하고 TKK를 통과하고 MPWH 허가 포털로 전달한 사람들의 직책을 요청한다.
- (h) 해당 SKKK는 통합 SIJK에 기록된다.

⁹⁵ 건설서비스법 제70조 1항과2항 및 GR 14/2021규정 제28조 3항

⁹⁶ GR 14/2021규정 제28조 2항

⁹⁷ MPWH 회람 서신 05/2022의 H글 1번

4. 정유 및 가스업 건설

인도네시아 업스트림(상류) 석유 및 가스 감독청(이하 SKK Migas)은 법 시행령 PTK 007 규정을 통해 상류(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사업 입찰 시행 지침을 제공했다. PTK 007규정의 주요 목표는 입찰 과정을 가속화하고 단순화하며,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PTK 007규정을 통해 관련 비즈니스 행위자는 상류석유 및 가스 운영 지원 내에서 수량, 품질, 가격, 시간 및 장소 측면에서 필요한 재품/서비스를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TK 007규정에 기초하여, 제품/서비스 조달의 활동 범위는 조달 계획, 입찰 과정, 계약 관리, 제품/서비스 제공자의 개발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한다. PTK 007규정은 토지 취득, 변호 사/법률 컨설턴트 서비스 및 보험 조달을 제외한 모든 제품/서비스 조달 활동에 적용되며, 이러한 조달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의 조항을 따른다.

PTK 007규정에 따른 몇 가지 일반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a, 석유 및 가스 협력 계약 체결자의 승인(KKKS)

PTK 007규정에 따르면, 제품/서비스 조달을 수행하는 KKKS의 당국은 다음 표에 따라 탐사 단계 또는 개발 단계의 사업 단계에 따라 분류된다.

번호	서비스	가치
	탐사 단계의 KKKS	
1	조달 목록	>Rp.50M / US\$5 Million
	개발 단계의 KKKS	
1	조달 목록	>IDR 50 Billion / US\$5 Million
2	입찰 계획	>IDR 50 Billion / US\$5 Million
3	입찰 실적	>IDR 200 Billion / US\$20 Million

4.	계약 범위 (PLK)의 개정 기본 계약 가치 〉IDR 200 Billion / US\$20 Million	a. 이중 가장 먼저 충족되는 조건: - 전체 PLK 〉 기본 계약의 10%; 또는 - 전체 PLK 〉 IDR200 Billion / US\$20Million
5	입찰 계획(통합 건설 공사)의 승인 전 사전 자격 심사 계획. 입찰 계획서 제출은 사전 자격 심사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수 행된다. 만약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보 고해야 한다.	>IDR 1 Trillion / US\$100Million
6	입찰 취소 (취소 이전)	>IDR 50 Billion / US\$5Million
7.	계약 취소 및/또는 해지 (취소/해지 이전)	>IDR 200 Billion / US\$20Million
8.	다음과 같은 경우 SKK Migas가 승인한 입찰 계획 변경: - 수수료 추가 - 작업 일정 이행 지연	>IDR 50Billion / US\$5Million
	SKK Migas 승인 요청에 대한 예외 사항	
1	긴급 상황의 대책	전체 금액
2	SKK Migas가 개발한 e-Catalog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조달	전체 금액

참고: 위의 모든 승인은 전체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발급됨.

표-8 SKK Migas의 승인

b, 국가 역량 증가

PTK 007규정은 다음과 같은 SME(UMK) 활용 정책을 제공한다:

- 1. 국내 기업,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역량 개발 및 사업 기회 제공에 필요한 KKKS에 대한 일반정책⁹⁸
- 2. KKKS는 TKDN 가치의 실현,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에서의 분명한 입지, 국내 기업 들과 협력을 통한 성과,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 등을 감독하고 검증 99
- 3. KKKS는 50,000,000,000 IDR 이상 또는 5,000,000 USD이상의 서비스 조달에 대한 가치계약에 대해 현지 소규모 협력사들과 하도급 계약 등을 포함해 현지 중소기 업들과 적극 협력¹⁰⁰

c. 계약 관리

PTK 007규정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간략한 계약 유형

1.	지불 방법에 따른 계약 유형	 일시불 턴키(Turn-Key) 백분율 단가 비용 플러스 수수료 인센티브 계약
2.	관계에 따른 계약 유형	 공동 계약 전략적 제휴 주문 중단 위탁 가격 계약 다중 상설 계약 기술 프레임 워크 계약 / 포괄적 계약 서비스 계약; 및/또는 기타 계약

표-9 조달 계약

d. 조달 절차/과정

PTK 007에 규정된 상품/서비스 조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번호	제공	비고
1.	자체 관리 조달 (Swakelola) 은 조달이 에너지 및 자체 장 비를 사용하여 구현, 계획 및 수행되고 자체 감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그 수 행을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다음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달 카드 사용 조달 카드의 사용자는 일부 관련 상품 / 서비스의 조달 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근로자 또는 조달 관리자 또는 상품 / 서비스 사용자이다.	거래 당 최대 US \$10,000 또는 IDR 100,000,000까지의 금액으로 조달에 사 용할 수 있다. 조달 카드는 BUMN 또는 BUMD 은행에서 발급한다. ¹⁰²
3.	상품/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수행되는 상품/서비스의 조달	상품/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임명은 입찰 (직접 선택, 직접 약속 또는 공개 경매) 또는 e-Reverse 경매 및 e-Catalog와 같은 전자 적(e-bidding) 수단을 통해 수행된다. ¹⁰³

표-10 조달 절차/과정

⁹⁸ 건설서비스법 제70조 1항과2항 및 GR 14/2021규정 제28조 3항

⁹⁹ 건설서비스법 제70조 1항과2항 및 GR 14/2021규정 제28조 3항

¹⁰⁰ 건설서비스법 제70조 1항과2항 및 GR 14/2021규정 제28조 3항

¹⁰¹ PTK 007 규정집 제VI장 본문 3.1.1

¹⁰² PTK 007 규정집 제VI장 본문 3.1.2

¹⁰³ PTK 007 규정집 제VI장 본문 3.1.3

일반적으로 공개 경매(pelelangan umum)를 통한 제품/서비스 조달 정책 계획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4 공개 경매 절차

e. 석유 및 가스 조달 프로세스의 중앙 집중식 통합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CIVD / Sistem Database Vendor Terintegrasi)

회람서신 0505/2016, 제VI장, PTK 007규정의 3.3 조항 및 회람서신 0346/2017은 KKKS가 입찰에 참여 신청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 ("공급업체")의 사전 자격심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업체들은 석유 및 가스 활동의 모든 조달 과정에 필요한 관리 문서 대체 인증서 "SPDA(Surat Pengganti Dokumen Administrasi)"를 CIVD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CIVD에 등록하지 않고 CIVD가 발행 한 SPDA가 없는 공급 업체는 자체 관리 메커니즘 (swakelola) 과정, 공개 경매, 제한된 경매, 간단한 경매, 직접 선거, 직접 임명 및 기타 모든 KKKS의 조달 프로세스 방법을 통해 상품 및 서비 스 조달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CIVD는 PTK 007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망 관리의 기본 원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SKK Migas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한, SKK Migas는 CIVD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공급망 관리의 관리 자격 평가 프로세스의 통일성/중앙 집중화를 유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CIVD를 사용하면 공급업체와 모든 KKKS가

특히 공급업체의 관리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조달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KKKS 검증 기관에 의해 CIVD 프로세스에 등록되고 검증되고 승인된 공급업체는 KKKS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조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SPDA를 획득해야 한다. 이 CIVD의 등록은 SPDA가 발행될 때까지 무료다. CIVD 및 SPDA 발급 절차의 등록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1. CIVD에 등록

아래는 CIVD 등록 과정에 관한 순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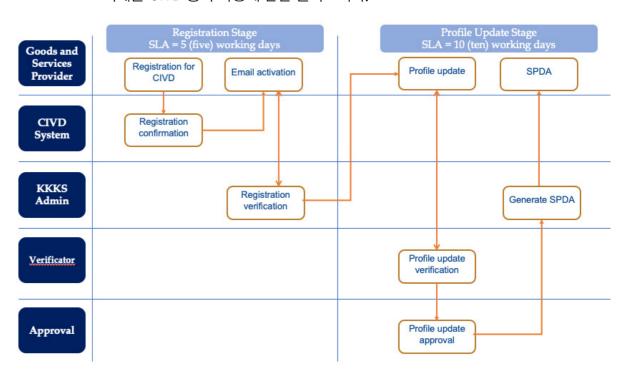


그림-5 CIVD 등록 흐름/순서

2. 비즈니스 과정 및 공급 업체 및 KKKS에 의한 CIVD의 다중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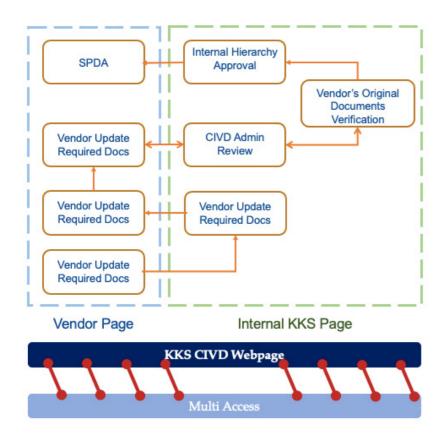


그림-6 사업 내용 흐름

위의 사업 과정 순서도에서 CIVD 응용 프로그램은 KKKS 및 공급 업체 측의 사용 자가 액세스 할 수 있다. 공급 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KKKS가 검토할 문서 형태로 모든 요구 사항을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KKKS는 CIVD에 제출된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문서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할 수도 있다. KKKS가 온라인 승인을 완료하면 공급 업체는 시스템에 CIVD 회원으로 자동으로 등록된다.

3. SPDA의 발급 및 유효성

SPDA는 공급업체가 KKKS 승인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급된다. 이 문서에는 프로필 업데이트 시작 과정을 통해 회사 관리 데이터에서 경험 데이터까지 포함된 모든 회사 정보가 CIVD에 업로드되고 입력된다.

그리고 SPDA의 유효기간은 CIVD에 업로드된 문서 중 유효기간이 가장 빨리 만료되는 문서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참조가 되는 데이터와 문서는 주소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모든 과세 데이터에 대한 자료들이다. 또한, 대차대조표는 SPDA의 유효기간에 대한 참조가 될 것이다.

CIVD 로그인 및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절차 매뉴얼 안내서에 관하여, SKK Migas 는 CIVD를 처리하고 조달 과정을 위한 SPDA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공급업체 및 KKKS에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https://civd.skkmigas.go.id/index.jwebs.

5.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a. 필수 요건

BUJKA RO는 해당 회사의 원 국적지에서 합법적으로 법인화된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야 한다. 또한, BUJKA RO를 설립할 계획인 외국 건설 회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¹⁰⁴

- i. 인도네시아의 대형 사업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업체의 형태 갖춘다.
- ii. 필요한 사업 면허를 취득한다.
- iii. 적절한 사업 면허를 획득한 대규모 국가 건설 서비스 사업자들과 공동 운영 협력을 맺는다.
- iv. 외국인 노동자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한다.
- v. BUJKA RO의 최상위직에 인도네시아인을 임명한다.
- vi. 국내 건설 자재 및 기술의 사용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vii. 높은 기술, 첨단 기술,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 viii. 기술 이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 ix. 그 외 법과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른 의무들도 수행한다.

104 건설서비스법 제33조 1f항

b. 사업 허가증

다른 유형의 대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BUJKA RO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응용 프로 그램은 OSS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 BUJKA RO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정보와 문서가 필요하다:

- i, 외국 본사에 정보 (i) 회사명. (ii) 국적/주소지. (iii) 이메일 (iv) 전화번호
- ii. 외국 본사의 정관 또는 회사 설립 및 법인 증명서;
- iii. BUJKA RO의 책임자(외국인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인 개인) (i) 이름, (ii) 국적 (iii) 거주지 주소, (iv) 인도네시아 주소 (v) 납세자 등록 번호 (인도네시아인용)
- iv. 본사에서 BUJKA RO 책임자에게 보낸 임명장*;
- v. BUJKA RO 관련 정보: (i) 사무실 주소, (ii) 전화번호, (iii) 이메일, (iv) 인력계획(외국인 및 인도네시아 근로자 수);
- vi. 기술자 관련 정보(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함): (i) 이름, (ii) ID 번호 및 (iii) 관련 SKKK ("기본 척도 SKK 9급" 또는 SKKK Jenjang Utama Jenjang 9 이어야 함);
- vii.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i) KBLI 번호 및 (ii) 활동 범위(섹션 D.2의 건설 사업을 위한 KBLI 번호에 관한 설명 참조);
- * 본사 소재 국가 주재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확인(대사 확인)을 받아야 함.

위의 정보를 모두 제출하면, 신청자는 OSS 시스템에서 환경 안전, 보건 및 보존(K3L)에 대한 자체 서약을 전자체계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후, NIB는 미 검증 표준 인증서와 함께 발급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섹션 D.3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SBU를 획득하는 것이다.

BUJKA RO가 모든 면허를 적절히 취득하고 상업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었으면, BUJKA RO는 항상 D.2절에서 논의한 자격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c. 공동 운영

상기 요구사항 섹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BUJKA RO는 적절한 사업허가를 받은 대형 국가 건설 서비스 사업자와 공동 운영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공동 운영은 새로운 법인을 설 립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협력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 로, 공동 운영에는 (i) 행정적 공동 운영 또는 (ii) 비행정적 공동 운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i, 행정적 공동 운영 (일반적으로Kerja Sama Operasi 또는 "KSO"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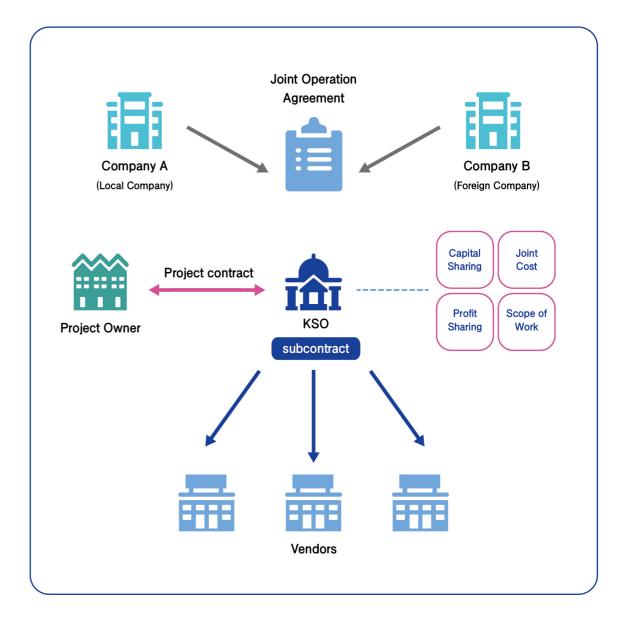


그림-7 KSO

이러한 구조에서는, KSO 내의 당사자들(보통 둘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됨)은 각 당사자들의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는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의도된 당사자들 또한 회계상 그들의 공통 부기와는 별도로 KSO를 위한 일정한 부기를 유지한다. 사업시행은 입찰제출, 업무분담, 사업자금, 자원, 송장, 사업계약 이행 등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대상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동운영은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준-법인체와 당사

자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조항 및 조세 절차법에 따라, KSO는 운영의 모든 과세 의무에 대해 NPWP를 보유해야 한다.

ii. 비행정적 공동 운영 (일반적으로 Consortium 또는 Konsorsium으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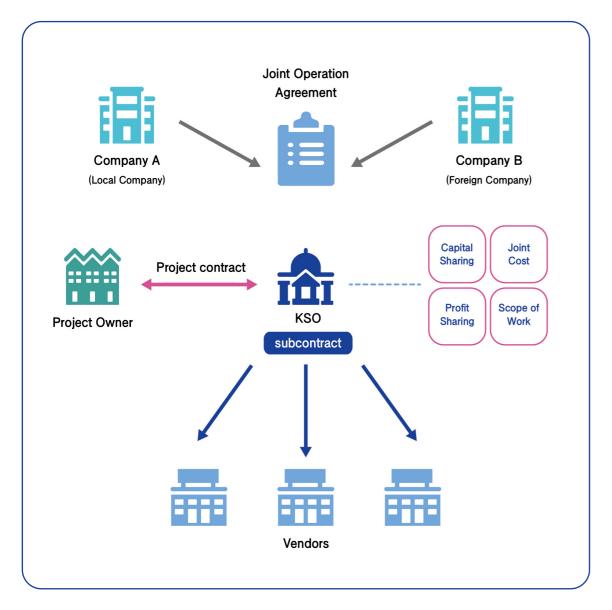


그림-8 컨소시엄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사업 당사자는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자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사자는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당사자간 공동운영약정은 단지 조정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회계상) 공동운영 부기와 각 당사자의 공동 부기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

대형 국가 건설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BUJKA RO가 행정 공동 운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6. 외국인 직접 투자 건설회사 (BUJKA PMA)

a. 필수 요건

BUJKA PMA는 평등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¹⁰⁵ 일반적으로 일반 PMA 회사와 BUJKA PMA 사이에는 아래에 설명된 허가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BUJKA PMA를 설립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는 부록 1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적용 가능한 KBLI 번호와 외국인 소유권 제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건설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b. 사업 허가증

상업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BUJKA PMA는 일반적으로 섹션 C.2에 설명된 대로 PMA 회사에 대한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 서비스업의 KBLI 번호는 중위험에서 고위험 업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BUJKA PMA는 표준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BUJKA PMA는 관련 KBLI 번호를 고려하여 섹션 D.3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SBU를 취득할 수 있다.

BUJKA PMA가 모든 적절한 허가증을 획득하고 상업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었으면 BUJKA PMA는 섹션 D.2에서 논의된 자격 요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¹⁰⁵ 건설서비스법 제33조3항

7. 해상 운송 회사 사업 허가의 일반 개요

해상운송업자로 활동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¹⁰⁶ 해상운송사업에는 공공서비스용 해상운송사업(국내, 해외, 전통)과 사적인 이익을 위한 해상운송사업 2종류가 있다. ¹⁰⁷ 공공 서비스를 위한 해상 운송은 SIUPAL을 필요로 하는 반면, 사적인 이익을 위한 해상 운송은 SIOPSUS를 필요로 한다. ¹⁰⁸

SIUPAL과 SIOPSUS모두 소유자가 등록된 선박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면허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는 한 항상 유효하다. 하지만 보유자는 2년마다 SIUPAL 또는 SIOPSUS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a. 해상 운송 사업 면허 (SIUPAL) 취득 요건

SIUPAL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NIB와 같은 OSS 시스템으로부터 표준 비즈니스 라이 선스를 획득하는 것 외에, 비즈니스 행위자는 MOT 조항 89/2018에 기초하여 다음 요건 들을 충족해야 한다.¹⁰⁹

i. 일반 요건

- (a) 공인 인증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증한 ANT II, ATT III 또는 DII 해운업 과정 이수 증을 소지한 해운업 전문가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b) PMA 회사의 경우, 최소 51%의 소유권을 국영 기업(들)이 소유해야 한다.
- (c) 사업 및 선박운항계획서(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기술적 요건

- (a)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175GT이상의 누적 크기를 가진 동력 선박 보유
- (b)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해상에서 운전이 가능한 누적 크기 175GT 이상인 동력 선 박(자체 추진 엔진 사용)을 보유
- 106 운송법 제57조 5번
- 107 운송법 제7조
- 108 MOT Reg. 89/2018규정 제5조 1항
- 109 MOT Reg. 89/2018규정 첨부 I

- (c) 최소 누적 크기가 175GT 이상인 인도네시아 국적 예인선 1척 이상 보유
- (d) 최소 누적 크기가 175GT 이상이고 선박의 일반적인 배치로 지원되는 인도네시 아 국적의(자체 추진 엔진을 사용하는) 동력 선박(자체 추진 엔진 사용) 바지선 1 개 이상 보유
- (e) 최소 150마력의 추진 엔진이 장착된 인도네시아 국적 예인선 1척 이상 및 최소 175GT 크기의 바지선 1척 이상 보유
- (f) 위의 (a), (b), (c), (d)항에서 언급된 선박 소유권은 선박규모증서 (dokumen grosse akta capal) 형태의 선박 소유권 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g) 위의 (a), (b), (c), (d)항에서 언급된 선박의 적격성은 다음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i) 공인된 선박 측정 문서
 - (ii) 인증된 선박 국가 증명서(Surat Tanda Kebangsan)
 - (iii) 인증된 하중 라인 증명서
 - (iv) 인증된 선박 안전 증명서
 - (v) 동력 바지선의 선원 목록
- (h) PMA 회사의 경우, 크기가 500GT이상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동력 선박이 최소 1 적이 있어야 하며, 다음 문서에 의해 증명된 인도네시아 선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i) 선박총증서 (dokumen grosse akta kapal)
 - (ii) 인증된 선박 측정 문서
 - (iii) 인증된 선박 국가증명서 (Surat Tanda Kebangsan)
 - (iv) 인증된 선박 안전 증명서
 - (v) 선박 분류 증명서

b. 특별 해상 운송업자 운영 면허 (SIOPSUS) 취득 요건

SIOPSUS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는 MOT 조항 89/2018에 따라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¹¹⁰

i. 행정적 요건

(a) 주요 사업 개발 기관으로부터 사업 면허 또는 추천을 받는다.

¹¹⁰ MOT Reg. 89/2018규정 첨부I

- (b) ANT III, ATT III 또는 D III 해운업 증서를 소지한 선박업계 전문가를 최소 1명 이 상 보유해야 한다.
- (c) PMDN 합자회사 (합자회사 PMDN 및 PMA)의 경우 PMDN이 보유한 주식의 51%를 소유한다.
- (d) 사업 계획 및 선적 운영 계획 보유한다.

ii. 기술적 요건

- (a)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이 최소 1척 이상 있으며, 배의 크기와 종류 는 주력사업에 따라 조정된다.
- (a) 선박의 소유권은 다음을 통해 입증된다.
 - (i)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 총증서 (dokumen grosse akta kapal);
 - (i) 인증된 선박 측정 문서
 - (iii) 인증된 선박 국가증명서 (Surat Tanda Kebangsaan)
 - (iv) 인증된 선박 안전 증명서
 - (v) 선박 분류 증명서

SIUPAL과 SIOPSUS는 모두 OS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상 운송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OSS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D

일정 및 설립 절차에 대한 순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건설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바로 외국 건설 회사의 대표 사무소(BUJKA RO)를 설립하는 것과 인도네시아 유한 책임 회사 (BUJKA PMA)를 설립하는 것이다.

1. 외국인 건설회사 대표사무소 (BUJKA RO)

a. 순서도

아래는 BUJKA RO 설립을 위한 순서도이다. 각 절차에 대해 아래 표기된 예상 소요시 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된다. (i) 모든 필수 구성 데이터 및 문서가 완료 (ii) 관련 기관들은 적시에 바로 피드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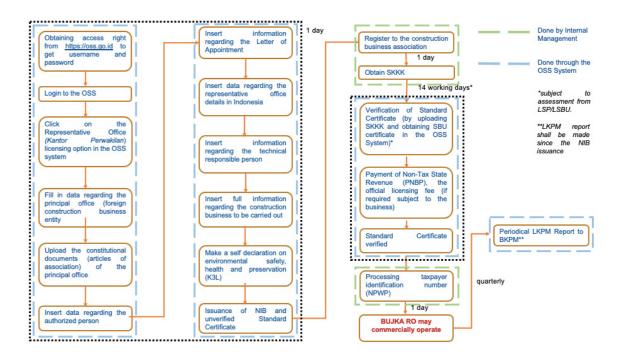


그림-9 BUJKA RO 설립에 관한 순서도

b. 예상 소요기간

번호	절차 과정	예상 소요기간	
1.	신청 자격 획득	근무일 기준 1일	
2.	NIB 및 확인되지 않은 표준 인증서 발급	근무일 기준 1일	
3.	건설 사업 협회에 등록	근무일 기준 1일	
4.	SKKK 획득	근무일 기준 14일(섹션 A.3 참조)	
5.	표준 인증서 확인 절차	확인 절차에는 SKKK 문서 내 용 업로드와 SBU 획득이 포 함됨. SBU는 근무일 기준 14일에 발행.(섹션 A.4 참조)	
6.	NPWP 처리 진행 (NPWP를 얻는 데 필요 한 문서 및 프로세스는 E.5.d 절 참조)	영업일 기준 1~3일	
7.	BKPM에 정기적으로 LKPM 보고	NIB 발행 후 분기별 실행	
	총 예상 소요기간 (BUJKA RO 설립 시)	근무일 기준 35일	

표-11 BUJKA RO 설립을 위한 예상 소요기간

2. 외국인 직접투자 건설회사 (BUJKA PMA)

a. 순서도

아래는 BUJKA RO 설립을 위한 순서도이다. 각 절차에 대해 아래 표기된 예상 소요시 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된다. (i) 모든 필수 구성 데이터 및 문서가 완료 (ii) 관련 기관들은 적시에 바로 피드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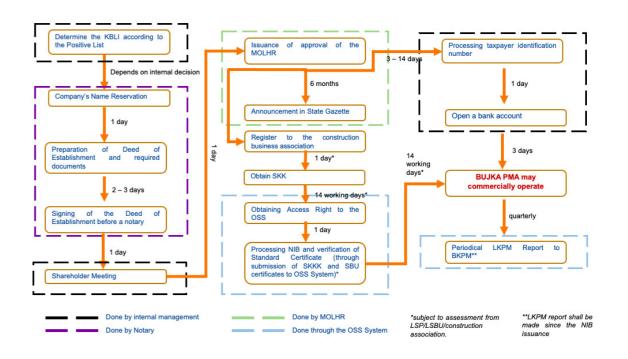


그림-10 BUJKA PMA 설립에 관한 순서도

b. 예상 소요기간

번호	절차 과정	예상 소요기간		
1.	진출가능 목록(Positive List)에 따른 KBLI 번호 결정	참여할 건설 사업의 KBLI 수 에 대한 투자자의 내부 관리 에 따라 다름		

2.	PT 이름 예약 (공증인에 의해)	근무일 기준 1일		
3.	설립을 위한 몇 가지 필수 자료와 함께 PT 설립 증서의 준비	근무일 기준 2 ~ 3일		
4.	공증인 앞에서 설립 증서 서명	근무일 기준 1일		
5.	주주총회	설립 증서에 서명 후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6.	MOLHR 승인 발급	PT의 경우, MOLHR의 승인 발급은 일반적으로 설립 증서 의 서명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으로 2일이 소요		
7.	건설 사업 협회 등록	근무일 기준 1일		
8.	SKKK 획득	근무일 기준 14일 (섹션 A.3 참조)		
9.	OSS에 대한 액세스 권한 획득	근무일 기준 1일		
10.	NIB 및 미확인 표준인증서 발급	근무일 기준 1일		
11.	표준 인증서 확인	SKKK 문서 업로드와 SBU 획 득이 포함되며 SBU는 근무일 기준 14일 이 내 발행.		
12.	NPWP 처리 진행 (NPWP를 얻는 데 필요한 문서 및 프로세스는 E.5.d 절 참조)	MOLHR의 승인 후 근무일 기준 3 ~ 14일		
13.	은행 계좌 개설	은행 내부 절차에 근무일 기준 3일		

14.	국가 관보에 발표 (공증인에 의하여)	MOLHR의 승인 발급 후 6개월		
15.	BKPM에 정기적으로 LKPM 보고	NIB 발행 후 분기별 실행		
총 예상 소요기간 (BUJKA PMA 설립 시)		근무일 기준 60 일		

표-12 BUJKA PMA 설립을 위한 예상 소요기간

3. 건설 작업 역량 인증서 (SKKK)

a. 순서도

아래는 SKKK 획득을 위한 순서도이다. 총 예상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4일이다. 각 절차에 대해 아래 표기된 예상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된다. (i) 모든 필 수 구성 데이터 및 문서가 완료됨 (ii) 관련 기관들은 적시에 바로 피드백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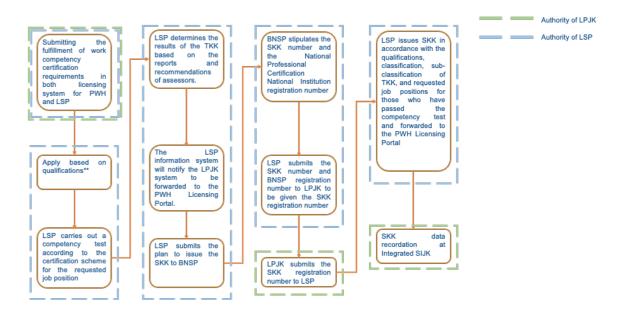


그림-11 SKKK 취득 순서도

4. 건설사업 자격증 (SBU)

a. 순서도

아래는 SBU 자격증을 획득을 위한 순서도이다. SKK를 얻는데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4일이다. 각 절차에 대해 아래 표기된 예상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된다. (i) 모든 필수 구성 데이터 및 문서가 완료 (ii) 관련 기관들은 적시에 바로 피드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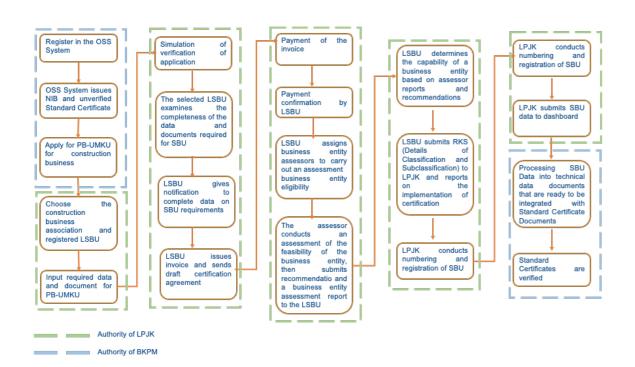


그림-12 SBU 취득 순서도

E

인력 및 문영

1. 인도네시아의 일반 인력 공급 현황

a. 인력 공급에 대한 설명

인도네시아의 인력 문제를 관리하는 법은 인력법에 포함되어 있다. 인력법은 근무 전, 근무 중, 근무 후 인력의 모든 측면을 규제한다. 인력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다음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i.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 ii. 국가 발전과 지역 필요에 따라 고용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인력 제공을 구체화한다.
- iii.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인력 보호를 제공한다.
- iv.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더불어, 인력법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규제한다. 고용관계는 확정임기 고용계약(PKWT) 기준과 미확정 임기 고용협약(PKWTT) 기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용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될 수 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b. 고용 계약의 종류

i. 확정 임기 고용 계약 (PKWT)

GR 35/2021규정 제4조 항에 의거하여, PKWT는 근무기간이나 특정 업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PKWT는 본질적으로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GR 35/2021규정은 해당 작업의 유형과 특성 또는 활동이 일시적일 경우, 다른 유형의 작업에 대해 PKWT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작업 기간을 기반으로 한 PKWT GR 35/2021규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작업 기간에 따른 PKWT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작업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 (i) 단기간 (최대 5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 (ii) 계절적 작업 (즉, 특정 계절, 날씨 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
- (iii) 신제품 개발 작업이나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아직 탐사가 진행 중인 추가 제품 개발과 관련된 작업.

GR 35/2021규정 제8조2항에 따르면, 작업기간에 기초한 PKWT가 만료되었는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장 후 총 작업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PKWT를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연장된 PKWT의 작업 기간은 초기 PKWT의 시작부터 계산해야 한다.

(b) 작업완료를 기반으로 한 PKWT

GR 35/2021규정 제4조1항에 따르면, 작업 완료에 기초한 PKWT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작업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 (i) 한번의 시도로 완료할 수 있는 작업
- (ii) 임시적인 작업

작업 완료에 따른 PKWT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본 계약서에는 완료해야 할 작업의 범위와 제한, 완료 기간 등이 명시된다. 합의된 기간보다 일찍 만료되는 작업의 완료에 기초한 PKWT는 그러한 완료일에 법률에 의해 종료되고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일일 PKWT

위와 더불어, GR 35/2021규정 제10조2항은 기간, 수량 및 급여가 출근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유형의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PKWT는 일일 고용 계약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 이 유형의 PKWT에 따라 고용된 직원이 3개월 연속 특정 월에 21일 이상 근무하면 PKWT는 자동으로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된다.

ii. 무기한 고용 계약 (PKWTT)

무기한 직원 계약으로도 알려진 PKWTT는 영구 고용 계약이다. PKWT와 달리 PKWTT의 업무 특성은 한 회사 내에서 지속적이고 중단되지 않으며 계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생산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3개월 이상 수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수습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저 임금 이하로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¹¹¹

PKWTT는 서면 또는 구두로 만들어질 수 있다. PKWTT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의 조항은 해당 노동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고용주는 PKWTT를 인도네시아의 인력 사무소 또는 다른 노동 기관이나 단체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한 고용 계약서를 만들 의무가 있다. 112

iii. 아웃소싱 (외주)

GR 35/2021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아웃소싱은 외주기업과 직원 간의 고용관계로 PKWT/PKWTT의 서면 고용계약(즉, 기간제 또는 영구제)의 실행을 통해 형성된다. 외주고용계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그것은 외주회사의 책임이다(다른 회사 책임이 아님).

이러한 직원의 권리는 고용 계약, 회사 규정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서 보호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업무나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제약이 더 이상 없다. 외주업체는 회사가 바뀌어도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직원들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저 임금

고용주는 지방 정부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상황 분석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를 수 있다.

¹¹¹ 인력법 제60조

¹¹² 인력법 제63조 1항

d. 직원 고용 종료

일자리 창출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고용 해지를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 규칙이었다 (특정 사정과 초당적 포럼에서 상호 합의된 경우 제외). 하지만 GR 35/2021규정 제37조 2항 및 3항에 따라 이제 고용주는 고용인을 해고할 시 그에 대한 의향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종료 통지는 최소한 종료 실행일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직원이 아직 수습 기간 중이라면, 서면 통지는 최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7일 전에 해야 한다.

해고 통지 서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i. 해고 사유

ii. 해고 지급액 및 해당 직원을 위해 마련된 기타 혜택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및/또는 노동조합·노조는 초당적 토론회를 통해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들이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사관계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해지에 이의가 없으면 사업주는 해당 지역고용 사무소에 고용해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e. 사무실 운영

i. 직원 근무 시간

고용창출법 제77조2항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 (a) 주 6일 근무일에 대해 하루 7시간씩, 1주일에 최고 40시간
- (b) 주 5일 근무일에 대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최고 40시간

ii. 시간외 근무

고용원은 일자리 창출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다.

- (a) 사업자(고용주)와 직원(고용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 (b)시간 외 근무는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18시간 까지 주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113

iii. 직원 휴식 및 휴가 기간

일자리 창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시간에 휴식이 포함되지 않은 4시간 연속 근무 후 최소 30분 이상 휴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직원은 또한 1주일에 6일 근무일 동안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12개월 연속 근무 후 최소 12 근무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줄 의무가 있다. 114

iv. 근무 시간 중 예배(기도) 시간

사업자는 직원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필요한 예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15

2. 건설 노동자를 위한 필수 요건

공공사업 및 주택부 (MPWH) 회람 서신 05/2022의 G 2번 i 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법률 및 규정에서 분류, 하위 분류 및 건설 노동자의 자격에 일관적인 동일성이 결여된 경우, PJTBU 및 PJSKBU에 대한 건설 SKKK 요구사항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환경 관리 및 구현 관리를 기반으로 한 6가지 자격 수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최고자격은 ASEAN 건축사 또는 ASEAN 공인 전문기술자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사 학력이 (S1)이 있는 9등급 자격이고, 최저 등급은 6등급 자격으로 최소 D3 교육 수료증이 있는 젊은 전

¹¹³ 일자리창출법 제78조

¹¹⁴ 일자리창출법 제79조

¹¹⁵ 일자리창출법 제80조

문기술자 자격(SKA)과 최소 D1 교육 수료증이 있는 SKTK 클래스 1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3. 외국인 근로자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적으로 일을 하려면,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은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 고용주들은 MOM의 TK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업과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GR 34/2021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 허가는 "RPTKA 승인" 또는 MOM이 TK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Pengesahan RPTKA로 언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RPTK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이사회 및/또는 운영회의 구성원 (BKPM Reg 4/2021 참조), (ii) 외국 주 대표 사무소의 외교 및 영사 직원 또는 (iii) 비상 근무, 직업, 스타트업 또는 기업 방문과 같은 정부 요구 업무 유형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면제된다.

정부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RPTKA 승인 요건을 면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면제는 3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스타트업은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RPTKA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MOP Reg 8/2021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3가지 필수 자격 요건이 있다.¹¹⁶

- 1.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직위의 자격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직위의 자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능력 또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 보조자에게 전문 작업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

4. 취업 및 체류 허가의 유형

GR 34/2021규정에 따르면, RPTKA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 a. 임시
- b. 6개월 이상
- c. I DKP-TKA
- d. KEK

임시 RPTKA 승인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다. 6개월 이상 RPTKA와 Non-DKP-TKA는 최대 2년 동안 부여되며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SEZ RPTKA는 최대 5년 동안 부여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회사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한 SEZ RPTKA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한 부여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고용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긴급/긴급 문제에 대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MOM 규정 10/2018에 따라 존재했던 긴급 RPTKA는 폐지되었다.

GR 34/2021규정에 따르면 RPTKA는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되어야 한다. 6개월 이상 RPTKA그리고 DKP-TKA가 아닌 RPTKA는 최대 2년간 연장될 수 있는 반면, SEZ RPTKA는 최대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a. 조건부 체류 비자(VITAS)와 e비자

MOM 규정 10/2018에 따르면, VITAS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서면 진술 서로, 인도네시아로 여행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목적의 제한적 체류 허가(Izin Tinggal Terbatas 또는 "ITAS")를 허가하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법무 및 인권부(MOLHR)는 2021년 9월 새로운 정상 적응 기간 동안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2021년 규정 제34호를 발표했다. VITAS는 MOLHR Reg 34/2021에 따라 전자 비자("eVisa")로 발급된다. eVisa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격리 및 감시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신,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독립지급의사를 표시한 서신 등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¹¹⁶ MOP Reg.8/2021규정 제4조

eVisa 및 ITAS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약 3,800,000 IDR 이며, 정부가 국가의 비과세소득의 일부로 지정한 은행(Pemasukan Negara Bukan Pajak 또는 "PNBP")에 지불해야한다. 수수료가 지불되는 즉시 DGI는 입국 허가서 역할을 하는 eVisa를 발급하고 이를 고용주 및/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내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eVisa를 받은후 9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eVisa가 무효가된다.

b. 제한 체류 허가증(ITAS)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공항 및/또는 도착 항구에서 즉시 ITAS를 받을 수 있다. ITAS는 재입국허가증(Izin Masuk Kembali)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자료가 담긴 스티커 형태로 발급되는 반면 전자ITAS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체정보를 확보한 뒤 발급된다. GR 48/2021규정에 따르면, ITAS는 최대 5년 동안 부여될 수 있으며 최대 누적기간 1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5. 기타 다른 운영 규정 준수 요건

a. 외국 건설회사에 대한 규정 준수(BUJKA)

GR 5/2021규정에 따라 BUJKA는 BUJKA가 종사하는 사업 부문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KBLI 번호 기준). 이러한 의무는 BUJKA RO 및 BUJKA PMA 모두에 적용된다. 117

- i. 연간 사업 활동 보고
- ii. 경험에 대한 기록
- iii. 다음과 같은 보안. 안전. 건강 및 지속가능성 기준 이행:
- iv. 재료 품질 기준
 - (a) 장비품질기준
 - (b) 산업안전보건기준

- (c) 건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표준 절차
- (d) 건설서비스 실시결과 품질기준
- (e)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
- v.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침; 그리고
- vi. 현행법에 따른 환경 관리 기준.

b. 연간 사업활동 보고서

BUJKA RO 및 BUJKA PMA는 건설 서비스 정보 시스템과 경험 기록이 통합된 "Aplikasi Simpan"이라는 건설 서비스 사업 신청서를 통해 연간 사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 i. 1차 경고 서한 형태의 제재는 공공사업 분야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부과한다.
- ii. 1차 경고 서한 이후 5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문 2차 경고 서한 형태의 제재가 시행된다.
- iii. 2차 경고 서한 부과된 후 5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서한 3의 형태로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 1,000,000,000 IDR 및 50,000,000 IDR 에 달하는 행정 벌금을 각각 BUJKA RO와 BUJKA PMA에 부과한다. 118

c. 건설 사업 법인증명서 (SBU) 의무

BUJKA RO 및 BUJKA PMA가 유효한 SBU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MPWH는 다음 금액으로 건설 서비스 활동 및 행정 제재에 대해 일시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i BUJKA RO: 전체 계약액의 20%의 금액
- ii. BUJKA PMA: 전체 계약액의 10%의 금액

또한, 건설 서비스 활동의 임시 정지 및 행정 벌금이 부과된 후 30 근무일 이내에 여전 히 BUJKA RO와 BUJKA PMA가 유효한 SBU를 소유하지 않거나 행정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¹¹⁹

¹¹⁷ GR 5/2021규정 부록 II, 페이지 II,8,A,67

¹¹⁸ GR 5/2021 규정 제424조 및 425조

¹¹⁹ GR 14/2021규정 제156조

d. 납세 준수 의무

BUJKA RO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하는 동안 영구 사업체 (Badan Usaha Tetap)로 간주될 수 있으며 NPW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과세는 인도네시아의 현행 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GR 40/2009규정에 따르면 건설 서비스 사업에는 최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새로 비준된 조세 규정법의 조화는 여섯 가지 규제 범위, 즉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 소득세 (PPh), 부가가치세 (PPN),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PPS), 탄소세 및 세관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개정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i. 소득세법
- ii. 부가가치세법
- iii. 조항 및 세금절차 법률
- iv. 관세법

Perdirjen Pajak 4/2021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한 모든 납세자는 전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NPWP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

- i. SABH는 법인 납세자를 위한 세금 정보 시스템 총국에 통합
- ii. OSS는 세금 정보 시스템 총국에 통합

NPWP 등록 신청은 납세자 등록 및 NPWP 제거 및 과세 대상 사업 확인 및 확인 취소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함께 동봉되어야 한다. ¹²⁰

NPWP 등록은 SABH 및 OSS를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따른다. 121

- i. NPWP 등록이 SABH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공증인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이 등록된 KPP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 ii. NPWP 등록이 OSS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KPP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2조 제1항에 따라 KPP는 납세자가 등록한 전자등록신청서에 근거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NPWP 카드 및 등록명세서 서면을 인쇄/발급하여야한다.

법인납세자등록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i. 국내 법인 납세자에 대한 설립 증서 및 개정서 또는 영구 설립 회사 또는 외국 회사 의 대표 사무소에 대한 본사의 임명 증명서 형식의 사업체 설립 문서의 사본
- ii. 인도네시아 시민을 위한 NPWP 카드 사본 또는 외국 시민을 위한 여권 및 NPWP 카드 사본 등 모든 법인 구성원의 신원을 보여주는 문서

온라인 등록을 위한 기술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i. 웹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ereg.pajak.go.id/
- ii. 계정을 등록 및 활성화하고 이메일, ID 번호 및 가족 카드 번호를 준비한다.
- iii. 활성화 후 계정에 로그인을 한다.
- iv. 등록 양식 및 명세서를 작성한다.
- v. 요청 토큰을 클릭하고 캡차 코드를 입력한 다음 제출을 클릭한다.
- vi. 토큰 코드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된다.
- vii.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토큰 코드를 입력한 다음 제출한다.
- viii. 카드가 발급되어 인쇄가 가능해진다.

e. 공간 사용 활동

예전에 위치 허가서(location permit)로 알려진 PKKPR은 BUJKA RO 또는 BUJKA PMA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하지만, UMKM (일반적으로 사업 위험도가 낮은)의 경우 사업장이 공간 배치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은 OSS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초안만 제출하면 되고 혹시라도 향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리스크가 중간 단계에서 높은 사업자의 경우 PKKPR 신청은 OSS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OSS 통합 RDTR이 아닌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 OSS 시스템에서 LOB(Line of Business, KBLI)를 신청할 때 각 당국에 따라 OSS 시스템으로부터 각 지역 내 공간계획

95

¹²⁰ Perdirjen Pajak 20/2018규정 제3조

¹²¹ Perdirjen Pajak 20/2018규정 제4조

과 관련된 농림부/국토청(ATR/BPN), 지역장치기구(OPD), 토지청 및/또는 DPMPTSP 시스템으로 신청서가 자동 전송된다.

하지만 OSS 통합 RDTR이 있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 경우, PKKPR 신청은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자동 PKKPR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공간계획 당국의 평가 없이 바로 처리된다. OSS 시스템은 OSS 시스템과 통합된 RDTR에 따라 계획된 활동에 대한 PKKPR을 검증한다.

또 이미 산업단지 사업허가증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PKKPR 신청서는 특별한 평가 없이 OSS 시스템에 의해 바로 처리되어 자동 발급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가들은 그들의 사업장 소재지 위치가 산업단지 내에 있다는 것을 진술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사전 평가 없이 발급된 KKKPR은 해당 기업이 다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기 있으므로 따로 지자체나 지방토지청에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계획된 공간 이용 활동이 위치 허가서 또는 KKKPR 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 토지 권리의 사본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발행된 위치 허가서 또는 KKKPR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이런 평가가 없는 KKKPR이 필요하다.

f. 환경 허가증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이 발행되기 전에는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 으로 환경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기업은 사업 또는 운영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작성해야 했다.

- i. AMDAL 형태의 포괄적인 환경 영향 연구(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이 있는 사업체용)
- ii. UKL-UPL 형식의 환경 영향 연구결과 (위 (a)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사업체용)

회사의 활동이 환경 영향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위의 AML 또는 UKL-UPL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회사에게 SPPL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보호 및 관리의 구현에 관한 일자리 창출법 및 GR No. 22/2021규정은 다음 과 같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순화시켰다.

- i. UKL-UPL 또는 AMDAL을 준수한다는 증거로 기업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ii. SPPL을 회사의 NIB와 통합하는데, 환경 영향 위험이 낮은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활동의 경우 UKL-UPL 또는 AMDAL이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인 사업 활동에 대한 보증서이다. 따라서 이전에 SPPL을 제출해야 했던 회사는 NIB를 획득하면 바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g. OSS 시스템 인터페이스¹²²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체는 OSS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생성함으로써 바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업자는 NIK만 입력하면 되고 외국인은 여권 번호가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OSS 시스템에서 새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된 전자 메일계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사업 분야와 투자 가치를 입력하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NIB를 발행한다. 그 통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로서 각 관공서에 전달될 것이다. 필요한 검증이 있을 경우, 관련 공인 기관이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그러면 OSS 시스템은 신청서가 승인, 미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검증한다. 만약 시스템이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완을 위한 자료를 더 요청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라이선스 시스템은 KBLI 번호를 기반으로 한 각 비즈니스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이 이루어지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사업주는 먼저 자신이 선택한 KBLI의 결정된 위험을 따라야 한다. OSS 시스템 허가 발급 절차는 다음 순서도를 참조.

^{122 &}quot;OSS-RBA를 통한 사업허가신청 가이드", https://www.bkpm.go.id/en/publication/detail/news/guide-to-submit-business-permit-through-oss-rba, April 2022년 4월 8일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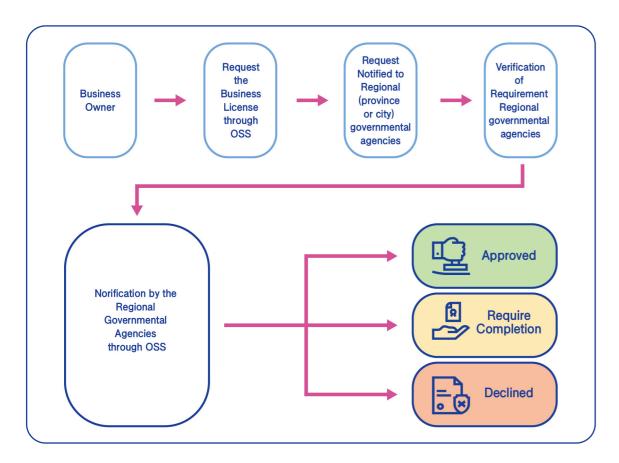


그림-13 OSS 시스템의 허가증 발급

위에서 언급했듯이, OSS 시스템은 원스톱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업체들이 면허를 챙기기 위해 많은 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OSS 시스템은 기업 설립을 위한 내무부 (Dukcapil), 재무부(세무서), 공공사업 및 주택부 그리고 국토계획부(세부 공간계획) 행정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OSS 시스템은 또한 사업 허가, 입지 허가, 환경 허가와 관련하여 기술부 및 지역 PTSP와 통합되었다. 한편, OSS 등록 절차와 사업 개발은 BKPM 산하에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일련의 완전한 절차를 포함하기 위해 사업자는 OSS 시스템 사용에 대한 다음의 4가지 주요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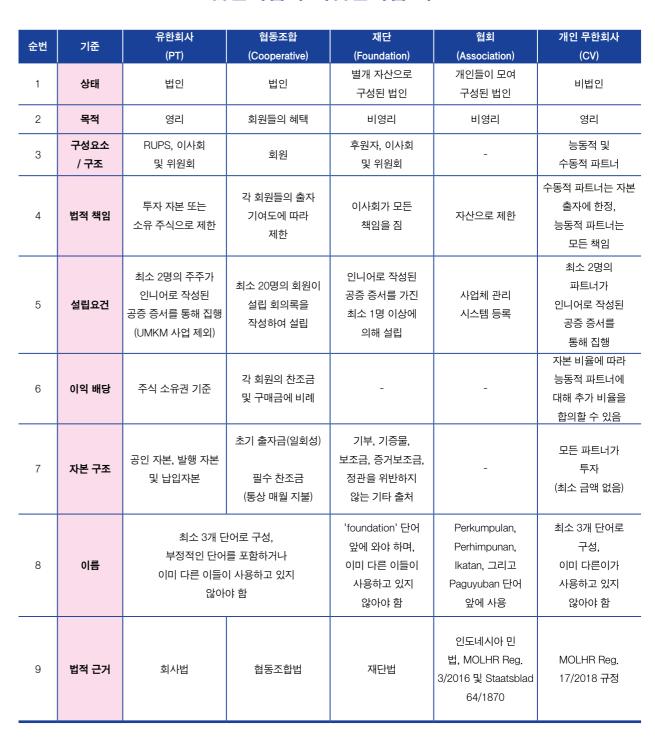
- 1, GR 05/2021
- 2. BKPM 규정 3/2021
- 3. BKPM 규정 4/2021
- 4. BKPM 규정 5/2021





부록I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 비교









부록

부록Ⅱ

건설 사업 법인 증명서 (SBU) 관련 사업자 분류 (KBLI)

시행령 PR 49/2021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MSME)에 할당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는 해당 사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한 최대 비율이다 (고급 기술이 불필요하고 협력 업체나 중소기업을 통한 단순/일반 설치 작업을 하는 사업 활동은 제외)

번호	사업분야 분류 (KBLI) 명칭	KBLI 번호	외국인 소유권 제한 (%)
1	주거용 건물 건설	41011	
2	사무실 건물 건설	41012	
3	산업용 건물 건설	41013	
4	쇼핑 건물 건설	41014	비 ASEAN
5	의료보건 건물 건설	41015	국가 투자자 최대 67 %,
6	교육 건물 건설	41016	ASEAN 국가 투자자
7	숙박 건물 건설	41017	최대 70 %
8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건물 건설	41018	
9	기타 건물 건설	41019	
10	조립식 건물 건설 서비스	41020	

번호	사업분야 분류 (KBLI) 명칭	KBLI 번호	외국인 소유권 제한 (%)
11	토목 도로 건설	42101	
12	교량, 육교, 플라이 오버 및 지하도의 토목 건물 건설	42102	
13	철도 건설	42103	
14	터널 건설	42104	
15	관개 및 배수 시스템 건설	42201	
16	정수처리 토목 건물 건설	42202	
17	토목건물 고체, 액체, 가스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및 시설 건설	42203	비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67 %,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70 %
18	전기 토목 건물 건설	42204	
19	교통 인프라를 위한 통신 토목 건물 건설	42205	
20	중앙 통신 시설 건설	42206	
21	지하수 우물 건설/시추	42207	
22	관개, 통신 및 기타 폐기물 네트워크 건설	42209	
23	수자원 인프라 건물 건설	42911	
24	비 수산항 건물 건설	42912	
25	수산항 건물 건설	42913	

부록

번호	사업분야 분류 (KBLI) 명칭	KBLI 번호	 외국인 소유권 제한 (%)
26	준설	42914	
27	석유 및 가스 토목 건물 건설	42915	
28	광산 토목 건물 건설	42916	
29	지열 토목 건물 건설	42917	
30	토목건물 스포츠시설 건설	42918	
31	기타 토목 건물 건설	42919	
32	수력 발전소 저수지 건설	42921	비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67 %,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70 %
33	해안 경비대 건설 서비스	42922	
34	토목건물 화학, 석유화학, 제약 및 기타 산업 가공 시설 건설	42923	
35	부대원 군사시설 및 위성발사 시설 토목 건물 건설	42924	
36	토목 건물 조립식 건설 서비스	42930	
37	철거 작업	43110	
38	토지 준비	43120	
39	통신 시설/장비 설치	43212	
40	전기 기계 및 장비 설치	43213	

번호	사업분야 분류 (KBLI) 명칭	KBLI 번호	외국인 소유권 제한 (%)
41	해양, 하천 및 항공 항법 건설 설치 서비	43214	
42	철도 신호 및 통신 시설 설치	43215	
43	고속도로 신호 및 표지판 설치	43216	
44	배수관/배수로 설치 (배관 작업)	43221	
45	난방 및 지열 장치 설치	43222	
46	석유 및 가스 설치	43223	비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67 %,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70 %
47	에어컨 및 환기 설비 설치	43224	
48	기계 설치	43291	
49	기상학, 기후학 및 지구 물리학 설비 설치	43292	
50	기타 건설 설치	43299	
51	유리와 알루미늄 설치 작업	43301	
52	바닥, 벽, 위생 장비 및 천장 작업	43302	
53	페인트 작업	43303	
54	인테리어 내장 디자인	43304	
55	외관 디자인	43305	

번호	사업분야 분류 (KBLI) 명칭	KBLI 번호	외국인 소유권 제한 (%)
56	기타 건물 공사 완료	43309	
57	기초와 말뚝 설치	43901	
58	비계(스티거) 설치	43902	비 ASEAN 국가 투자자
59	프레임과 지붕/지붕 덮개 설치	43903	최대 67 %, ASEAN
60	강철 프레임 설치	43904	국가 투자자 최대 70 %
61	건설 장비 대여 및 운전	43905	
62	다른 특수 건설	43909	
63	기타 경영 컨설팅 활동	70209	외국인 투자를 위해 100 % 개방
64	건축 활동	71101	외국인 투자를 위해 100 % 개방
65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 컨설팅	71102	전력 설비 분야의 컨설팅, 기타 분류되지 않은 엔지니 어링 활동 및 단순 및 중간 기술을 사용한 기술 컨설팅 은 규정 PR 10/2021에 따라 규제된 협동 조합 및 소 규모, 중소기업과의 파트너 십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100 % 개방.
66	실험실 테스트 서비스	71202	비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67 %,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70 %
67	시운전 견적 산업, 품질 보증 (QA), 단 품질 관리 (QC) 서비스	71206	외국인 투자를 위해 100 % 개방
68	인테리어 디자인 활동	74120	비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67 %, ASEAN 국가 투자자 최대 70 %

법인설립 가이드북